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7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장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공수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소관 순서로 심사하고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1월 12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 보류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이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전문위원이 각 기관별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은 기관 측 이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관 측은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간략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쟁점이 큰 사안은 우선 보류시키고 마지막에 모아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사에 이어서 오늘 법사위 예결소위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각 기관별 처우 개선이나 R&D 또 교육연수 예산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대폭 수용하고 많은 예결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건 함께 인식할 겁니다.

다만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 예산에 대한 증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늦게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출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용 권한은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의원실에서 언론사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지탄은 국민들께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썼다고, 비싼 밥 먹었다고 고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또 자체 절제와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10시09분)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법무부 예산소위 심사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두 보고를 드리면 법무부의 경우에는 불수용이 전체 사업 건수 중의 7건인데요. 검찰국과 관련돼서 있는 거고 다른 실국은 불수용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수용하더라도 액수 선택의 문제가 있어서 다 수용은 하지만 액수 선택의 문제 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목차를 보시면 9개 실국을 차례대로 배열했고요.

목차 다음에 그동안의 한 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작년을 보시면 특경비나 특활비 이런 게 감액돼서 일반회계 보시면 제일 맨 밑에 487억이 감액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범죄기금이 31억이 증액되고 부대의견이 작년의 경우에는 23건이 제출되어서, 보통 10건에서 20건 안팎으로 부대의견도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법무부 소관 예산심사소위 자료 개관 이것은 올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소위 자료 개관인데요. 전체적으로 감액 의견은 8건, 증감에 걸쳐 있는 게 1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43건,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이 21건이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의 경우에도 수용 의견인데요. 부대의견을 인권친화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이성윤 위원께서 ‘인권친화 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연차별 추진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고요.

다음 2쪽, 법무실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배상금 지급이 있는데 형제복지원이라든지 선감학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소 취하 포기가 있어서 배상금 수요가 증가하는데 좀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801억 하고 1810억이 있는데요 둘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부대의견은 ‘법무부 확정 판결 사건의 신속한 배상 집행, 분담 협의를 구체화하라’는 이성윤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고요.

변호사 제도의 선진화와 관련돼서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징계 수위가 조금 낮아서 부대의견으로 박은정 위원께서 ‘대한변협 징계 수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쪽, 인권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권국 법률구조 사업의 통합시스템 컨택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김용민·박지원 위원께서 3억 3000하고 밑에 꽈규택·김기표·박균택·송석준 위원께서 8억 85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내역이 다른 거고 중복적인 건 아니어서 8억 8500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송석준 위원님께서 법률구조공단 이천지소 건설 관련 6억 4500을 제안해 주셨고요.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꽉규택 위원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산지소 개원 관련해서 6억 4500을 증액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법률구조재단 관련해서 광규택 위원, 김기표 위원께서 추가 지원 5억 1600 하셨습니다.

다음 5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설립을 위한, 원스톱솔루션센터가 있는데 기술적 보안 대책 강구로 5억 3000 증액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참여 기관 단계적으로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 관련해서 이성윤 위원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기금 부대의견은 이성윤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전산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진술조력인은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 넘어가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처우 개선하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도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감액, 세입인데요.

K-ETA 면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입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감액이 있는데, 수용인데 감액의 액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건 넘어가고요.

2번, 부대의견 ‘이민정책연구원 예산 편성이 다년도에 걸쳐 있는데 단년도 기준으로 하라’는 이성윤 위원 부대의견이 있고요. 이민정책연구원의 DB 통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9페이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은 단순 증액 의견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부대의견은 박지원 위원께서 목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건립하고 외국인 포용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1쪽, 외국인보호 의약품 구입 사업비 5200만 원 늘려 달라는 김기표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강제퇴거 대상 보호외국인에 대해서 보조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외국인보호경비대원에 대한 위험수당을 1억 3900만 원을 책정하는 서영교 위원 의견과 박균택 위원의 2억 6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역상 계산상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3쪽,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은 단순 증액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14쪽 위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으로 이성윤 위원께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실제 참여 인원을 고려해서 예측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밑에는 단순 증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5쪽 상단에 이민재단 위탁사업의 경우에 공개가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성윤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7번은 넘어가고요.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입국정보 시스템운영과 관련돼서 특히 법무부는 서울청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출입국정보화전산센터 신설 등 원활한 유지관리·운영을 위해서 화재 대비 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는 김기표 위원, 박균택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 국유재산관리기금.

상주 외국인 보호소 신축과 관련돼서 5억 9800만 원 증액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국 관련해서 여기 불수용이 몇 개 있는데요.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는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찰청 폐지나 공소청 신설 추진을 중단하라는 송석준 위원의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신동욱 위원께서 검찰 해체한다면서 수사권 전제로 한 검찰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 그에 따라서 공소청 출범에 따른 소요 예산도 산출해서 법무부가 보고하라는 부대의견까지 있고요.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서 공소청 출범을 위한 기초 예산 소요 검토 등 예산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라는 김용민 위원, 이성윤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특경비 관련입니다.

송석준 위원께서 특활비 21억, 특경비 69억 감액하라는 의견과 집행내역을 전부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고요.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박은정 위원께서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70여억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고요.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이성윤 위원님께서 기밀 유지에 필요한 특활비나 특경비가 좀 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실 수준으로 투명한 집행관리 체계 마련한다는 의견, 이것은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위원·전현희 위원께서 특경비나 이런 게 식사비 이런 것으로 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업추비로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특경비는 감액하고 업추비는 20억을 증액하라는 전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1쪽, 검찰업무정보화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4번 형사부 등 수사지원과 관련돼서 모바일 통보 건수의 액수가 조금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어 감액 의견인데요. 액수를 정해 주시면 되고요. 영장심의위원회 수당도 실제적으로 개최 실적이 미진해서 그것에 맞게 감액 액수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이스피싱 진위확인서비스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이성윤 위원께서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 집행 부진을 고려해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인데요. 감액 액수가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23쪽 하단 11번의 검찰청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매년 지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매년 과다편성이고 또 그 과다편성을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해서 감액 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의 의견이고요. 불수용입니다.

그다음 24쪽 가겠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 건설보상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박지원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국제법무국으로 가겠습니다.

1번은 국외여비, 정책연구비 등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교정본부 관련입니다.

교정공무원 대상 특수건강검진비 등에 1억 8100만 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부대의견으로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보조율을 90%보다 낮추면서 민영화에 대한 외부 위탁을 증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27쪽에도 법무부는 교정직 공무원에게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처럼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박은정 위원의 부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대체복무 증액, 대체복무 균역을 하는 사람들을 예비군 훈련비 2억 500만 원 증액하라는 의견이고요.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정시설 수용관리인데요. 교정시설 수용관리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증액하라는 의견인데요. 증액 액수를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29쪽, 교정교화 관련해서는 내역사업인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법무부는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확대 예산을 마약류관리법이 통과되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하라는 이성윤 위원의 부대의견이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 교정시설 장비운용 현대화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밑에 하나 있는데요. 교정시설에 석면으로 건축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석면 자재를 제거한다든지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고 특히 교정직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추미애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범정국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 범정국의 보호직 공무원이 소년원생 등의 감호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에 있는데 그 감호실무관 144명의 위험수당 확대인데요. 9억 3000으로 제출된 서영교 위원 안과 1억 7600으로 제시된 박군택 위원 안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 의견 들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안산소년원 공무직 근로자 7명 충원 예산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복비, 의료비 증액 의견이어서 넘어가고요.

증액 의견이라도 33쪽, 감호실무관 위험수당을 지금 4만 원을 주고 있는데 월 4만 원에서 8만 5000원으로 해서 600만 원 증액하는 서영교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전자감독 관련해서 무도실무관 위험수당을 이미 주고는 있지만 4만 원에서 이것도 8만 5000원으로 올리자는 서영교 위원의 1억 800만 원 증액 의견과 12만 5000원을 월 지급하자는 2억 700만 원 증액 박군택 위원님 의견이 있는데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4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담 인력 확충 예산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 증액 액수 부처 의견 들어서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35쪽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안양소년원 재건축사업 7억 원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과 그리고 김기표 위원님 등의 7억 4000이 있는데 이것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쪽 36쪽,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사업, 청소년 비행예방 전주지법·검찰청 부지 내에 청소년 비행센터하고 법체험관 조성사업인데요.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성윤 위원님의 의견이 있고요.

법무연수원 관련해서 표절검사 프로그램 예산, 표절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143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부대의견으로 표절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과 표절 논문 처리기준을 마련하라는 이성윤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기획조정실 1번에 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법무실 소관 업무 관련해서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실은 1번, 2번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인권국 관련하여, 인권국 관련해서도……

○**소위원장 장경태** 말씀하실 때 혹시 증감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비용추계와 또 법무부에서 파악한 비용추계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언급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실 업무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만 국가배상금 지급 관련해서는 증감액에 대해서는 1810억 원 증액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인권국 관련해서는 1번 법률구조 예산 관련해서는 3억 3000 증액과 8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둘 중에서는 8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해서 보시는 페이지 4항으로 1번, 2번, 3번, 4번 모두 수용 의견이고요.

외국인보호관리 중에 박균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보호경비대원 214명 지원 예산 관련해서는 단가 8만 5000원, 증액으로는 2억 6095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부안이 4만 5000원 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님께서 4만 5000원을 증액하는 안, 이 안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5번, 6번, 7번 관련해서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이고요.

검찰국 사항 관련해서 1번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불수용 의견이 있고요. 그 내용도 해당 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국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모두 수용 의견이고요.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서 추가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검찰청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는 불수용 의견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법무부 소관 해남지청 이전 신축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국제법무국 수용 의견입니다.

교정본부 소관 업무 중 1번 교도소 행정지원 관련해서 1번 수용 의견이고요. 2번, 3번, 4번, 5번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업무 관련해서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 부분도 수용 의견이고, 법무연수원 1번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입니다.

대략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긴밀하게 상의하고자 실국별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관련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법무실 관련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1810억 증액을 말씀하셨고요.

○최혁진 위원 법무부가 1815억 원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지급된 배상금이 한 3000억 규모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억과 약 1810억 가량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하루에도 약 9000만 원 가량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소송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내년에도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만 편성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연손해배상금 지급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부법무실장 박성민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한 9.4억 차이나는 게 소송비용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여서 국가배상금 플러스 소송 비용에서 두 안 중에서 1810억 5500만 원이 되는 게 이게 계산이 저희가 요청한 금액입니다. 이게 저희의 3년 동안에 보통 나갔던 국가배상금에 저희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1심이 아직 계속 중인 사건이 내년에 확정된다면 지급해야 될 금액을 저희가 추계한 것이어서 이걸 합한 금액이, 지금 요청드린 게 부족한 금액입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법무부법무실장 박성민 법무실장입니다.

○송석준 위원 성함이?

○법무부법무실장 박성민 박성민 법무실장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1810억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김

기표·김용민·박지원 위원님이 해 주신 안대로 해도 될까요?

○김기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이견 없으시면…… 또 이견 혹시 있으셔도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나실 때마다.

인권국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법률구조와 관련돼서 법무부가 8억 8500만 원 제시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 없으십니까, 법무부의 8억 8500 증액 수용에 대해서? 꽈규택·김기표·박균택·송석준 위원님 네 분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8억 8500으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천지소 이것 6억 4000도 다 수용 가능하신 거지요?

○김기표 위원 논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논의해야 되지, 이거.

○송석준 위원 논의해 주실래요? 보니까 제가 나온 김에 이천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법률 수요가 많은 동네인데 이게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 지원 여건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면 한번 좀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찬성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차관님,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도 열심히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지소 신설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양산 지원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저희에게도 얘기해 주시면 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관련된 이견 있으신가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증액 42억 원, 어떻게 재정 당국하고 좀 협의가 된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 반영이 막 좋은 상황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데 혹시 어떠세요? 혹시 좀 여기서 조정을 미리 해서 가는 게 편하실지, 협의하실 때,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일단 하셔서 예산 논의 과정에서 조정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법무부인권국장 승재현 사실 이 부분은 성평등가족부하고 저희가 같이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비용 사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혹시 만약에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꼭,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노력하는데 같이 저희들이 노력한 바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는 게 성평등가족부의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재부와 노력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국장 승재현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게 전 정권에서부터 이미 저도 여가위 예결소위 할 때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 저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에 별개로.

말씀하시지요.

○**최혁진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보장시설, 요보호시설의 입소자를 처우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맞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법무부인권국장 승재현** 피해자 지원은 좀 따뜻한 마음으로 잘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여가위가 예산 확보가 좀 여의치 않아서 아마 법무부에 많이 요청했을 거예요. 제 예상, 여가부에서는 아마 법무부로 요청을 많이 했을 겁니다.

○**김기표 위원** 크게 올려서 깎이더라도……

○**소위원장 장경태** 아마, 그렇지요.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차관님, 주진우 위원인데요. 이민정책 개발지원, 이민정책 연구원 이런 거 다 좋은데 지금 왜 중국인 무비자 정책 시행되면서 그때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중국인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범죄전력이나 불법체류 이력에 대해서는 다 사전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국감 기간이어서 너무 이슈가 많아서 못 다루었는데 1인당 그것을 점검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해야 되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인력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실제 엄청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점검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그냥 불법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서 그냥 시스템으로 돌리면 쭉 점검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전부다 일일이 점검해야 되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전에 탑승 정보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뒤에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불법체류 전력이 있거나 우리나라에 재입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중국 여행사가 중국인을 모집을 해요. 그러면 기준에는 비자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인데 비자가 아예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무비자면 여행사가 모집하고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며칠 안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 사이에 법무부가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실무적 부분은 지금 출입국단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입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불법체류 전력이나 범죄 이력이 있는, 국내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점검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외국인이다 보니 이게 유사명, 영문 표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유사명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체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좀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 일부 수동을 가미해서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은 100% 걸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체류자를 잡아 보면 기존의 불법체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그게 이제 비자 심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입국 금지 기간이나 과거 이력, 인도적 사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관광객을 사전 점검할 때는 아주 그냥 루틴하게 그거는 불법 이력이 있으면 일단 무사증 대상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고, 그 사람에게는 사증 심사를 별도로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시스템을 저희 의원실에 별도로 자세히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걱정하는 바는 이왕 시행이 됐으니까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나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들이 다 이민정책 개발 지원, 이민정책연구원…… 다 좋은데 이것 되게 먼 미래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오늘 예산 한 것 중에 거기와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무가 엄청 비약적으로 늘 것 같은데, 이게 한 사람당 18만 건 점검하고 그러던데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숫자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인력은 내년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인력은 신청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것은 무사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력이 있는 사람을 간소하게 전원 심사해서 일단 떨어뜨리고 그분들한테는 사증 심사를 별도로 받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사증에 대해서 이 사람을 좀 이력이 있는데 살려 줄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단계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이력이 있으면 일단 안 된다고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사증을 별도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현재 보도된 바로는 지금 6명 정도 불법체류자로 전환돼 가지고 1명 못 잡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그런데 그것은 그 시행일 날 발생한 건데요. 그것은 크루즈 상륙 허가가 6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5명은……

○주진우 위원 나머지는 불법체류자가 발생 안 했어요, 아직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지금 무사증으로 온 사람들은 8명이 발생해서 지금 4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총 14명 정도 되는 거네요, 크루즈를 합쳐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크루즈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면허료 관련된 감액 의견…… 지금 이성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이성윤 위원님 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 감액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소위원장 장경태 감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내년도 정부안 304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200억 원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304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20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에 출입국시설 관련돼서 청사 이전이 연기됐잖아요, 1년 정도. 부산 지역 합동청사 이전 계획이 1년 연기된 거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단장님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 권한대행으로 나와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것 지금 신규로 임차를 새롭게 편성해야 되는 예산인 거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기존에 기재부하고 동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에는 없고요. 행안부 청사 소급은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 됐어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소위원장 장경태 행안부랑 협의는 하신 거고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없으시지요?

그리고 4번의 외국인보호관리 예산에서 21년도 코로나…… 그러니까 1억 3000 수준에서 5000을 늘려서 1억 8000 수준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21년도 코로나 수준으로 올리는 건데, 지금 그 수요가 늘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4번입니다, 11페이지. 지금 5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약값이 항상 부족해서……

○소위원장 장경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것…… 대상이나 규모가 는 건 아니고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것하고 또 보호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어서 약값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계호 업무 관련돼서는 1억 3900만 원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일단…… 지금 서영교 의원님 안으로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양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관련돼서, 13페이지 5번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각각이 다른 사안이니…… 계절근로자 도입 예산 8억 2000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관련 20억이 반영되는 걸 수용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상 이견 없으시면……

○박균택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13페이지 동포체류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외교부에 재외동포청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재외동포청하고 업무가 겹치는 영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은 재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 입국한 교포를 상대로 지원을 하는 업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법무부하고 법무부 출입국청과 겹치지 않는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우리 동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을 상대로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법무부 출입국본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상대로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왜 외교부에서는 국내 업무까지 욕심을 낸다는 소문이 들립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게 재외동포청에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포들께서 많은 건의사항과 의견이 있을 텐데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 법무부에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해외동포에 대한 지원에 정책을 맞추어서 재외동포청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법무부에서는 동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체류 질서에 대한 부분, 국내에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고려해서 지금 정책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외동포청이 조금 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균택 위원 외교부가 역할을 잘하는 건 좋지만 어떤 본인 고유의 업무와 남의 부처 업무까지 헷갈려 가면서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게 하면 안 되겠지요, 외교부가? 그러나 대신에 법무부도 외교부로부터 그런 참견을 안 받으려면 정말 소통을 잘하고 서로 협조할 부분을 잘 협조해서 그런 영역 다툼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할 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저도 박균택 위원님 질의와 연관돼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재외동포청이 지금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

지요? 굉장히 큰 규모로 짓던데, 여기도 보니까 주로 하시는 일이 정체성 교육이라든지 사회통합 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대규모 센터를 국내에 건립을 해서 해외교포들이 국내에 와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배우고 함양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일정 기간 체류하다가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아무 차이가 없는지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위원님 말씀 중에 동포에 대한 교육과 국내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외동포청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무부에서는, 지금 비자 정책 관련해서 동포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들께서도 국내에서 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통합해서 사회에서 적응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동포에 대한 지원 부분이 너무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입니다.

○최혁진 위원 어쨌든지 간에 서로 좀 협력을 해서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그게 일단 한번 설립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해외에 한글 교육하는 데도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을 기반으로 한 한국 한글 교육기관들이 쭉 있고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교육부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부가 해외에 한글교육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어디가 해야 되냐 주도권 싸움도 하고, 그게 벌써 한십수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전혀 조정이 안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같은 결로 귀결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외교부하고 서로 협력·소통을 하신 적이 있나요, 관련해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이 많이 과견을 나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에. 그렇게 해서 정책 수립 단계나 집행 단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성윤 위원님, 방금 7페이지에 법무부에서 304억에서 104억으로 200억 감액 수용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이성윤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국은 맨 마지막에 하고요. 국제법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법무국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송석준 위원 지금 여기 여주 소망교도소가 민영 교도소로 유일한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지금 국제법무국 사안……

○소위원장 장경태 교정이 아니고……

○송석준 위원 교정본부구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국제법무국 사안의 심의 과정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정본부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민영 교도소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2010년에 시작해서 15년이 됐습니다.

○**송석준 위원** 15년. 지금 소망교도소가 유일한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송석준 위원** 해외 사례도 비교 좀 해 봤나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미국이나 다른 브라질 같은 나라도 비교했는데요.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일 잘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요, 외국 사례를 보면?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일부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러 개가 있어요, 민영 교도소가?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국마다 다른데요. 일부 극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한국이 15년 해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지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언론을 보시면 재복역률이 한 5%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정착되고 있다고……

○**송석준 위원** 일반 평균은 재범률이 얼마지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저희가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할 때 22.6%였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물론 그것을 수용 구분할 때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는 미리 면접을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 그래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절차가 국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참작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민영 교도소로 수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나 보지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조건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가장 중요한 것.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마약이나 성폭력,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비위·성폭력…… 성이 한 50% 된다는데 강간이나 마약이나 그런 건 제외하고요 형기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상 재범률이 적을 수도 있고 실제 운영도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걸로……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현재까지는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학술대회도 했던데 거기 오셨던가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저희가 국회 일정도 못 가고요. 저희 소속 과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 송석준 위원 과장님 오셨어요?

○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해당 과장님은 지금 행사에 있고요.

○ 송석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돼서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이 강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어떤 식으로?

○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익사업을 태양광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연 한 2100만 원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영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을 확대하거나 다른 부분을 좀 연구해서 민영이 운영하는 데 문제 없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민영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원만히 협의 중에 있고, 그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 하고?

○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 송석준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 최혁진 위원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민영교도소 같은 경우에 해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범률을 낮추거나 하면서 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 최혁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략 출소 후에 취업률, 취업이 또 재범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걸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성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하던데 우리도 그런 제도가 연계가 돼 있나요?

○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이번에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그런 부분도 도입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혁진 위원 그런데 또 과거에 타 국가에서 생겼던 문제는, 민영을 하게 될 경우에 생겼던 주요 문제 중의 하나가 어쨌든 재소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지원들이 여러 부처의 정책 사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국영 같은 곳들은 원만하게 연계가 되는데 민영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안 되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차이들은 없습니까?

○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지금 민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 법인에서 교도소를 짓고 운영비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좀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영하고 협의해서 개선책을 계속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최혁진 위원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타 국가의 성과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성과가 더 잘 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교정본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정책부.

○**박균택 위원** 저 잠깐만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교정본부장직무대행이시지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박균택 위원**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원지검에서 검사가 연어회 파티를 열고 부당한 회식 또 공범 간의 진술세미나, 이 의혹이 제기된 그 사건 관련해서 검사의 잘못된 처신을 항의도 하고 또 지난번에 장경태 소위원장님이 밝혔듯이 그걸 일제히 기록으로 남겼던 교도관들도 있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또 교도관들이 자긍심 내지는 명예심을 가지고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바로 그런 교도관들이 잘되는 이런 풍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박균택 위원** 저는 그 이름도 기억을 못 하는, 이름도 잊어 버린 교도관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인사나 보직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또 나중에 그런 문화를 선도해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그간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감찰과 확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각에서 공현한 교정공무원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관련돼서 지금 국립묘지법에 경찰·소방공무원만 안장되는데요 사실 교정공무원분들도 제복공무원이라고 저는 여겨 왔는데 또 어찌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 소년원생 수용은 1억 7600만 원 박균택 위원님 안을 수용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어서요 서영교 위원님 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박균택 위원** 예, 양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9300으로, 8만 5000원 정도가 아마 재정 당국이 수용 가능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저도 딱 보고,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기는 한데……

전자감독 무도실무관에 대한 위험수당도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 입장이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호직 공무원하고 무도실무관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월 수당을 지금 편성을……

○**법무부차관 이진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1억 800만 원 증액이신가요, 2억 700만 원 증액안이신가요?

○**박균택 위원** 서영교 위원님안.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서영교 위원님 안입니다. 1억 8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1억 8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소운영 인건비 관련돼서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증액, 주진우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겠습니까?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61명을 수시직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관련돼서 직제 분야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전담인력 확충 예산편성 필요하다는 부분은 부대의견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현재 전자장치 추적 업무를 무도실무관분들이 하고 계시지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일반공무원도 있고 무도실무관 167명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런데 어찌 됐건 무도실무관을 증원한다는 의견 아니신가요, 주진우 위원님은?

○주진우 위원 예.

현재 1인당 몇 명 감시해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1인당 19.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오히려 저번보다 통계가 더 나빠졌네요. 1인당 17명대였는데 좀 늘어났습니까?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현재 4840명가량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전자발찌를 쳤 정도가 되면 법원에서 점점 엄격해지기 때문에 다 살인·강도·강간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에 수시직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고. 한 사람이라도 범죄를 하면 한 가정이 망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지금 증액 규모나 이런 것 보면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제 작업을 사실은 선행을 해야 인건비 추계가 가능해서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주진우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요. 내부 조정을 하든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제가 봤을 때 법무부 업무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보면 예산 중에 교육부터 미래지향적인 것도 다 좋은데 이것은 당장……

저는 깜짝 놀랐네요. 1인당 17명도 선진국 중에 최고 높은 수준이어서 그때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가지고 인력을 좀 늘렸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1인당 19.8명 되면 선진국 대비로 네다섯 배 되는 거예요. 1인당 20명 전자발찌 찬 사람 감시하라 그러면 그 전자발찌 찬 사람이 강력범죄에 나아갔을 때 그 감시한 무도실무관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어떻게 감시합니까, 몸이 하나인데.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기계설비를 고도화하든 법무부에서 인력 배치를 하든 뭘 하든 법무부 내에서도 법무실 등등의 각 부처별로 칸막이가 있어요. 저도 근무해 보면 다 각자 자기 예산 챙기고 자기 것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차관님, 이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주진우 위원** 19.8명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것을 제가 부대의견으로 할 테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로 부대의견 문구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수시직제, 갑자기 직제 늘릴 수 없는 것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범죄 바로 뚫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실제 현장에서의 미비점을 제가 직접 점검을 해서 보완을……

○**주진우 위원** 1인당 20명은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방안을 마련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저 하나만 질문 있는데요 17명대로 가려면 몇 명 정도 증원을 해야 되나요, 지금 19명대에서 19.8명까지 갔는데?

뒤에서 계산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몇 명 정도 규모의 증원 요구가 필요한지. 왜냐하면 처우개선도 당연히 중요한데 증원 관련된 논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김기표 위원** 저는 당연히 그런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누구라도 동의하고 그런데 실무가 어떤지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인당 평균이 당연히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많다고 보여지는데 나라의 예산이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분배하는 게 예산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전자장치가 한 4000명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지금 분업화돼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체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물론 최악의 경우에 사천몇 명이 다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중의 한두 명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서 단속하고 그러면 평균으로 치면 19명 20명, 물론 평균이 적으면 좋겠지요, 그것은 대전제예요. 우리가 그 것은 논외로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17명, 19명 돼서 만약에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할 때 인원들이 과부하에 걸리거나 이런 현상이 있나요?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현장에 저희들이 실무상 경험해 보면 외국 사례는 대부분 10명 아래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상으로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1명당 한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8명, 거의 20명가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일일이 다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요 일단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성년 유괴 이런 것 하면 경찰이 5만 명을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하겠다 그러는데 불안하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5만 명을 상시적으로 배치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발찌는 4000명인데 이 사람들 그때 제가 통계랑 사례를 죽 뽑아 보니까 한 명 한 명 범죄가 너무 극악해요. 거의 살인에 준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극악하고 아동성범죄도 많고. 이 사람들만 잘 관리해도 강력범죄 비율이 확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전체 규모로 보면 엄청 적어요, 인건비 예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이 백억을 법무부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 일이 백억의 효율이 뭐가 제일 높냐 하면 저는 이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법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자발찌에 대해서 신청 대비 기각하는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극악한 범죄가 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를 차게 되고 전자발찌를 차면 꼴깍 마라가 되면 애초에 범죄 예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숫자가 예를 들어 인건비로 한 200억만 늘려도 10명 안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충 계산해도? 그렇지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그것은 계산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적정한 숫자는 2배 정도라는 거잖아요, 법무부 입장에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 파악되면 저희 방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위원장님, 조금만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염려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61명을 우선 수시로 해서 연말에 배치하는 것으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고요. 이 인력은 저희 범죄 예방, 4800명이라는 인원 중에서도 아주 더 고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긴급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61명은 현재 하고 있어서 예상대로 되면 연말에 우선 배치를 하고요. 그 외에 19.8명을 약 10명 정도로 낮추는 방안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방안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보통 사고가 나면 한 분만 출동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몇 인 1조로 출동을 하세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최소 2인 1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다른 1명이 원래 관리해야 될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되는……

○소위원장 장경태 그렇지요. 안전하게 제압하려면 3인에서 4인은 필요하시겠네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안양소년원 여기도 7억과 7억 4000이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7억 4000이 맞는 것으로 보고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일단 우리도 지금 범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현재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들어오면 재범률도 꽤 높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범죄 예방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건립할 때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까지 결합하고 있는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색채부터 해서 공간 구성까지를 정서적인 안정화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적인 기법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 다 적

용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공간이 좁으면 좀 넓히고 거기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범죄 안 하게끔 안전시설 강화하는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여기 또 여성소년원이네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에도 있으니까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계획안에 포함을 하셔 가지고 하다못해 색채 구성이나 공간 구성을 개조할 때 그것이 범죄 예방에 훨씬 효과적인 방안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기가 시범기관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 증액하는 김에 관련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봄 주십사 얘기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도 하나……

○소위원장 장경태 예, 말씀하십시오.

○이성윤 위원 이성윤입니다.

솔로몬로파크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전주시 구시가지가 슬럼화되고 있긴 하지만 옛날 전주검찰청·전주지방법원 부지가 아주 슬럼화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밤에 가 보면 컴컴하고 불량소년들이 가서 비행 소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전주지방법원 옮긴 지가 벌써 한 육칠 년 돼 가지요? 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가 보니까 반대하는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반대하는 기관은 없는데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저기다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요. 왜 그렇게 지지부진합니까?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계획에 관여하게 된 것은 2021년도인데 당시에 저희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고 국회에서 예산이 담겨져서 저희한테 왔던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막상 착수를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예산 50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진행이 안 되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주시에서 대체 부지를 저희한테 두 번 제의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업 타당하다고 해서 그걸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올해 전주시하고 LH·기재부에서 원사업자로 다시 회귀해서 거기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가고 총사업비를 좀 조정해서 하자 이런 4자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철거 문제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담겨지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철거 비용도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됐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철거 비용은 계상이 된 겁니까?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총사업비 조정이라는 것이 주로 핵심 내용이 철거 비용하고 부지 조성 비용을 추가해서 조정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철거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2029년부터입니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산이 내년에 담기고 기본설계를 하면 후내년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후내년이면 2028년입니까?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7년 내지 8년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법원·검찰청을 끊긴 지 10년이 다 돼 가도록 진짜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거기서 문제 생기고 그러면 법무부가 책임질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느슨하게 할 일이 아니고요. 시기를 좀 앞당긴다든가, 아니면 이것 범죄의 온상이 되고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가 될지 모르고 또 전주 시민들이 다니면서 을씨년스럽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자리가 무슨 공동묘지 자리였다던가 그래요. 그 뒤 너머에 중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10년 후에 철거하니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해 가지고 표지도 붙이고 또 시민들께서 ‘이제 뭔가 돼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갖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 넓은 부지가 이렇게 방치돼 있으니까 ‘시는 뭘 하느냐? 도는 뭐 하느냐? 국가는 뭐 하느냐?’ 이런 의문을 계속 저한테 제기를 합니다. 이게 소관이 범죄예방정책국이니까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안 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언제 철거하고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이것 2029년에 철거 시작한다. 이러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다 됐는데. 가능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그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 방에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하고 LH하고 기재부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속도는 최대한……

○**이성윤 위원**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것이 벌써 10년이 돼 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 주시고 국회에서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시민들 입장에서…… 가 보세요, 한번. 을씨년스러워 가지고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 부지가 지금 법원하고 법무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돼 있나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 부지 비율이?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현재는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은 기재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기재부하고 전북 도비, 시비, 다 매칭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보니까 법무부가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송석준 위원** 잠깐 이것 한번 물어보지요.

전국에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몇 개 있어요, 법무부가 운영하던 시설 중에 이전을 해서 이렇게 아직도 유휴화되어 있는 시설들이?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법무부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송석준 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는 이전한 지가 10년 이 넘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주지검이 신청사로 이전한 것이 19년도 연말이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19년도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19년 연말이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지금 6년 됐네요. 그런데 이게 이미 당초에 이전해 가면서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전하면서 바로 솔로몬로파크를 만들기로 확정됐던 사업인가 보지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법무부가 주도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역에서? 이게 중간에 약간 왔다 갔다 한 거구먼요.

○**최혁진 위원** 이게 선례가 있잖아요. 진주검찰지청 있던 데가 장기간 동안 방치돼 있던 것을 그것도 그때 법무부가 좀 미온적이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저도 관여를 했지만 푸시를 해서 결국은 거기를 다, 진주시 하고였나요, 진주였는지 창원이였는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기 건물을 지자체하고 해서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비영리 단체들이 들어와서 지역사회 서비스하는 공간으로 해서 완전히 변모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근거로 해서 이 국유시설, 오래된 옛날 검찰지청 이전 부지, 그때도 그 공간을 못 내놓겠다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검찰도 좋은 소리 들었고 법무부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이성윤 위원** 최혁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솔로몬로파크에 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케이스를 보고 벤치마킹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왔어요. 저는 이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서로 미루다가 이렇게 벌써 7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이걸 해 놓으면 법무부도 칭찬받고 국민들도 좋고 지역사회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체자가 없어요.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법무부가 주관을 해서 갈등이 있으면 조정하고 해서 가능한 한 신속히 추진해서 그 지역사회가 불도 켈 수 있도록, 너무 캄캄해요. 적극 추진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성윤 위원**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구청사 활용계획은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서울혁신파크를 비롯해서 여럿 있습니다.

제가 28페이지 교정본부 하나 체크 못 한 게 있어서 이것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죄예방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연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연수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법무연수원에서 지금 교육 수요의 한 몇 프로를 담당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체 교육 수요라고 하면 법무·검찰 말씀하십니까?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검찰 관련해서 저희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법무연수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송석준 위원** 대부분 여기서 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다만 인권국이라든지 유관 기관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을 임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검사들뿐만 아니라 수사관들 또 기타……

○**법무부차관 이진수** 교정공무원, 보호관찰직, 기타 등등 각 직렬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요새 신종 범죄들이 극성을 부리고 지금 그게 사실은 법무부와 수사, 우리 검찰이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를 활용한 범죄들이라든가 신종 각종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획수사와 뭔가 고도화된 어떤 수사 역량을 갖고 하면 국민들에게 사후적으로……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가 발생하고 했지만 무지막지한 범죄가 감당이 안 되고 나중에 사후 약방문하는 게 얼마나 피해가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종 범죄들의 경우를 보면.

그래서 선제적으로 법무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아마 가장 가성비 높은 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의지를 갖고, 이번에야 갑자기 이게 어렵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내년 초부터 준비를 할 텐데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신종 범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주는,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명예에 피해를 주는 이런 신종 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또 수사관들이나 법무부의 관계 공무원, 공직자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가 지금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무연수원이 진천에 있고 또한 지금해야 되는 수당 비용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 우수 강사와 전문적인 교육 부분이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트가 신종 범죄에 대한 연구도 수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일선 검사·수사관들이 습득해서 실제 사건에서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법무연수원에 지시를 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내년도에 예산 짤 때, 2027년 내지 아니면 내년 중에도 이런 것은 정말 가장 시급한,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런 각종 강력 신종 지능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을 빨리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법무연수원……

○**이성윤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위원장 장경태** 있으세요? 하십시오.

○**이성윤 위원** 차관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도 연구위원으로 발령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지요, 그걸 개정해 가지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구위원에서 다시 다른 일반 검사로 보직할 수 있다고 시행령을 개정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정현 검사가 논문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렇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를 하려면 전제는 연구위원들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 마련되고, 두 번째 그와 같은 경우에 논문을 제대로 제출할 수 있는 환경 플러스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법무연수원에 그런 게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본적으로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계획과 진행 상황, 결과물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연구 규정을 좀 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직접 규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당시 징계 사안에서 기본적인 연구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수행할 예정사항 등도 연구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되지 못했던 사정들도 고려가 되어서 징계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게 연구가 제대로 성공되려면 일단 연구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일선 청에서 검사장들이 연구위원으로 가고 그러면 일단 법무연수원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일정계획을 내라고 그러는데 그 계획도 말이지요 일정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언제 제출한다 이런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점검해야 되고요.

연구과제라는 게 어떤 경우는,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국가적 차원으로서 오랫동안 연구해야 할 장기 과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잠깐만 연구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과제에 따라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내라고 하고 안 내면 징계하면 그게 연구 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연구의 실태를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한동훈 검사장은 연구 결과물 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는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정현 검사 안 냈으면 한동훈 검사장이 징계를 해야 맞지

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의 절차와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 여건을 마련하시고 관련 규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구가 제대로 돼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법무연수원에서 정말 연구위원들이 송석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국민생활에, 필요한 범죄수사에 필요한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규정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징계하면 누가 수용을 하겠어요? 이 정현 검사장 징계한 것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표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검찰국에서 연수를 보내면 연구 결과물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게 대학교수들이 듣는 얘기에 의하면 표절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구 논문을 끓어서 책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걸 본 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위원이든 또 검사 연수 과정이든 나온 논문에 대해서 표절해 가지고 법을 지켜야 할 검사들이 표절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그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더욱 유념해서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무연수원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에 있는 교정본부 교정시설 수용 증액 요구입니다.

김기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고요. 2000여 명이 초과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급식비·의료비·피복비·생필품·건강보험·예탁금 등을 포함해서 90.3억 정도 필요하다고 왔는데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의견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소위원장 장경태** 90.3억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90.3억에 대한, 2000명분에 대한 증액의견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아까 주진우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전담인력 일인당 관리인원이 1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한다’라는 문구를 주셨는데 부처에서는 어떠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용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28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에 있는 검찰국 보고반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용도 있고 하니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그래도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나씩 짚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공소청 신설 관련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이번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하겠다 그리고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중수청 관련 예산은 행안부로 가기로 합의가 된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본적으로 중수청 소속이 행안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행안부 범정부TF에서 조직 예산을 어떻게 할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범정부TF에서 그것 관련 예산도 짜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조직·인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그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검찰국 관련 예산은 전면 보류 중에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검찰국 관련해서, 검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업무가 공소청에서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때까지 기본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 이후에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조직과 인력에 대한 안이 마련되면 그 단계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검찰국 관련 예산은 제로로 놓고 일단 가자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찰국 관련 예산은……

○**송석준 위원** 내년 26년 예산, 이번에 정부안에 태울 때, 이번에 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때…… 지금 정부안에는 여기를 어떻게 해 왔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년의 기준과 내년에 활동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해서 현재 검찰국 예산, 검찰활동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석준 위원** 현재는 예산을 반영했어요? 전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거의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수사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시는 이유는 전년도에 특활비하고 특경비가 삭감됐던 부분을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내년 필요 부분만큼을 편성한 상태여서 그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년 수준으로?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송석준 위원** 어차피 2번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특활비에 대해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 내역이?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특활비는 기밀성 유지를 요구하는……

○**송석준 위원** 기밀성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의 일부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저희가 대법원 판결 취지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전향적으로 공개하신 내용까지를 반영해서 저희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부지검에서 모 언론사에 예외적으로 공개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그 부분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공개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상적인 공개일 수도 있다?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법무부, 대검에서 공개하는 범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동부지검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동부지검장이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상급 기관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바로잡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징계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방치하면 소위 특수활동비의 기밀성 유지 또 법무부 검찰국의 고유 권한이 무너지고 고유 업무에 훼손이 올 텐데 이것을 방치하고서 어떻게 앞으로 검찰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그 부분은 당시에 동부지검에서도 공개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자체 스크린을 하면 위에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 봐야 되잖아요. 지금 힘 있는 지검장이 그 자리를 갔다고 해서 위에서 그냥 눈치 보고 이렇게 방치하는 모양이 되면 되겠어요?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공개된 기준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정보공개를 통해서 제공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침이 기밀활동에 필요한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정도 문제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위해성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검찰 내의 지휘체계가 벌써부터 몹시 문란해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내부의 존립 기반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냉정하게 이걸 따져 보시고. 어차피 국가의 기강을 유지하는 부처가 법무부 아닙니까? 국가의 범죄를 예방하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부처부터, 우선 검찰에서부터 스스로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벌써부터 검찰 기반을 이렇게 훼손하면 앞으로 국가 기반, 기강이 무너져 가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 점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도 9월 말에 정치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서면을 동부검사장에게 전달한 바도 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강력하게 해야지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 입법부의 한 성원으로서, 헌법 기관의 한 성원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이지만 해병대에서 소위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던 당사자가 마치 영웅이 돼서 환생을 해 갖고 지금 국방부의 고위직으로 승진을, 진급을 했을뿐더러 완전히 고위직에 가서 뭘 하겠다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군대가 소위 이제는 항명을 영웅시화하는 사회가 되면 대한민국의 특히 군이라는 특수조직의 지휘·명령체계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

면 유사시 외적이 쳐들어오고 국가에 변란사태가 터지면, 군이 제대로 지휘권이 발동이 안 되면 군은 당나라 군대를 넘어서 아마 역사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군이 될 텐데 저는 검찰도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 법사위장에서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외국의 각국의 제도를 비교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본받을 정말 잘 돼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도 조기에 회복탄력성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입법부에서 문제지요, 입법부에서 1987년 법률체제의 문제가, 헌법체제의 문제가 알고 보니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 더 무지막지한 게 그야말로 다수를 점한 입법부의 권력이 제왕적 대통령까지도 그야말로 무너뜨리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77년 다듬어진 형사사법체계까지도 이렇게 흔들어 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여러분 국가 전산망 마비됐지요. 한 달이 넘도록 엄청난, 이건 아마 철저하게 따져야 될 거예요. 유무형의 국민적·경제적 손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또 동서발전이 철거 작업 중에 붕괴돼 가지고 7명이 아직도 구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 뭘 말해 주느냐? 동서발전도 공기업이고 또 국가전산망은 국가의 핵심, 행안부, 행자부 내의 아주 중요한 국가의 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전산망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얘기입니다. 이것을 손댈 때는 이런 피지컬한 현상조차도 가장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정보자원관리원, 전혀 그쪽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어설프게 손대다가 화재가 나고 국가전산망이 마비됐단 말이에요.

이런 피지컬한 현상도 잘못했다가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검찰이라는 이것은 국가에 오랫동안 다듬어져 온 그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아닙니까? 이것을 손대면 정말 치밀하게 시간을 두고 제대로 개편 작업을 해야지 어설프게 그냥 한꺼번에 확 없애 버리고 또 어설프게 새로운 걸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장착이 안 될 때는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게 될 고통의 크기는 이번의 전산망 마비사태보다 훨씬 더 심대할 겁니다. 구체적인 재산 피해,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법무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님이시니까 또 장관님이시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하고 또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치밀하게, 제도 변화를 하더라도 충분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 할 때는 과감한 태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명심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장경태 21페이지의 4번 감액에 대한 부처 의견 있으십니까? 4·5·7번 감액 의견에 대한 수용 의견이신데 어느 정도 비용 추계를 하셨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비용 관련해서는 통보 건수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3870만 원까지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현재 4억 편성돼 있는데 3870만 원으로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니요. 3870만 원을 감액……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3억 얼마지요? 3억 6000…… 이거 비용 하셔서 누가 계산해주시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3억 613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3억 6130만 원, 이걸 정확하게 30만 원까지 계산해서 하실 건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이게 저희가 산정한 기준이 예산 편성 기준으로 했던 통보건수에서 10%를 감축한 금액을 감액 요청드리는 것이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362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5번, 형사부 등 수사지원에 대한 감액 의견.

○법무부차관 이진수 형사부 등 수사지원 관련해서는 3300만 원을 감액해서 8억 5640만 원입니다.

○김기표 위원 100만 원 단위니까 십만 원은 빼고 100만 단위로……

○소위원장 장경태 예, 100만 단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죄송합니다. 감액해서 최종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여기 26년안에는 885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 중에 영장심의 수당만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김기표 위원 단위가 100만 원이구나. 단위가 100만 원이네요.

○최혁진 위원 단위가 100만 원 단위 아니에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지금 889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영장심의 수당만 아마 차관님께서 하신 거 같은데……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영장심의 수당이 1억 3300만 원인데 그중에 33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원으로 해 주시면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1억 원을 감액?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33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영장심의 수당이 33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니까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1억 3300에서 3300을 빼 주시면……

○소위원장 장경태 예, 1억으로.

7번 감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내용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 예산 사업은 900만 원 감액, 스토킹 범죄 등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7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 사업은 300만 원까지 감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총액 합산하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1900만 원이 되나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감액 금액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1900만 원.

○박균택 위원 한 가지, 그런데 이 부분은 이성윤 위원님께서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라

는 의미보다는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감액하라는 의미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줘야 할 분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를 최근 9월에 개최를 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현황 점검 및 협력 필요 사항 논의하는 등의 전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기계적으로 이렇게 감액해 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법무부가 ‘열심히 일을 해 달라’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해서 예산도 늘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희가 이런 것 지적하니까 예산 감액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이건 4번의 3800 또 5번의 3300, 7번의 19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 또 포함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7번 같은 경우 저도 박군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사회연대경제조직하고 정부가 협력해서 사회 서비스를 늘려 나가자라고 하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 부처도 오늘 행정안전부가 정책 총괄을 맡는 쪽으로 교통 정리가 돼서 입법도 추진 중인데 이런 사업들이 관련해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어쨌든 여기 사회적 약자 대상 관련 교육이나 이런 심리 예술치료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감액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런 조직들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전문화하고 내실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감액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이 예산이 긴요하고, 사실 더 활동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집행 프로세스 등을 저희가 좀 점검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7번은 감액하지 말고 놔두시고 열심히 하는 걸로……

○소위원장 장경태 예, 검찰국 예산은 한 번 더 희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좀 더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의견을 좀 주시지요. 검찰국 관련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포함해서.

○최혁진 위원 특활비 관련해서 어쨌든 특활비·특경비 집행 내역하고 지출증빙서류 제출이 굉장히 미온적인데 저는 왜 이게 미온적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국민적 정서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여론에 크게 터졌던 게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성남까지 가서 검사들하고 한우파티를 벌였는데 그걸 쪼개기로 결제하고 아래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최근에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 민생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가중돼 있는 상황인데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아주 큰 거를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는……

자꾸 보면 이 예산이 사조직 관리에 투여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게 검찰 내부에서 과다하다라고 생각하십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경비나 이런 것들이 일선의 많은 평검사들이 고르게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다, 저도 검찰 쪽에서 관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 중앙의 특수통 검사들이나 이분들이 과도하게 많이 쓰는 거지 일선 검사들은 사실은 별로 만져 보지도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불만 요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부가 쓴다는 얘기는 사조직 관리, 계파 관리로 비춰질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거는 국민들이 이해할 문제는 아니고 검찰이 나서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수사 관련해서 쓰여지는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주가조작 수사를 하는데 법정에 부를 수는 없지만 불러서 좀 들어 봐야 될 분들 모시면 거마비라도 해 드리고 하는 데 쓰라고 이런 돈들이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신분을 노출만 안 시키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도 내역을 일정하게 정리하고 투명하게 관리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잡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정보가 노출된다 이거는 저는 과다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특활비 관련된 내역들을 공개하게 된 게 대통령실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정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만들어 온 정책이 이게 표지 같이만 한 정책인지 실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비서관들이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 서울까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만나서 밥도 사드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하는 데 이런 용도가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개인 이름 다 안 쓰고 정책·정보 하는 데 얼마를 썼다라고 하면 이름 다 X자 표시하고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그 정도 공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로서는 자꾸 이렇게 하시면……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저도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 보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까지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조치를 예산 검증하는 사이에 의견을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가 돼서 검찰개혁들이 완수가 되는데 저는 검찰 쪽의 입장이 아직도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공소청에 수사관을 남길 생각이십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내년도 예산 검토하는데 검찰의 속 생각이 무엇이냐. 제가 국조실의 검찰개혁 TF 쪽에도 물어보면 검찰 생각에 대해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료도 잘 안 주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검찰은 어쨌든지 간에 무늬만 굴리고 실제로는 공소청에 지금 현재 있는 대검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데려가 가지고 진용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 오니까 국민들

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꾸 갖는 건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저도 묻고 싶어요, 도대체 지금 우리 검찰들은 내년도에 공소청에다 수사관을 남길 생각이냐 아니냐. 최소 수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수사권에 영향을 행사할 정도로 진용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0에 가까운 숫자로 가야 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이 예산에 저는 분명히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일단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서 중수청 신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검찰 수사 개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범 시기가 내년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검찰이 민생사건 등 관련해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수사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공백 없이 범죄수사 역량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이후에 공소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무슨 제도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범위와 인력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는 다른 기관에 이관한다든지 그때 맞춰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최혁진 위원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단 돼서 작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사 영역도 많이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특활비 관련해서……

○소위원장 장경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최혁진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수사 건수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특활비가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쓰여지는 거에 대한 분류라도 있어야지 예산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데 그런 거 없이 총액만 갖다 이렇게 딱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집행되거나 소위 방만하게 사용되는 규모와 실제 여러분들이 수사업무를 하는 데 투여되는 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편성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분명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장경태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일단 이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확인하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차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 10월에 공소청이 출범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달리하고 지금 현재 그건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이 짜져 있는 건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통상 생각하기에 내년 10월이면 회계연도 중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특경비나 특활비 이것은 내년 12월까지를 전제로 하고 짜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월에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그 나머지, 물론 그건 법이나 법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정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게 이관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만약에 10월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기표 위원 취하는 조치는 물론 중도적인 조치로서 법이나 이런 결로 규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결국은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짠 것이고,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특활비가 지금 72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으로 40억은 그때 추경할 때의 기간이 있어서 앞에 자르고 해서 그런 건데 그럼 기준을 제가 좀…… 2025년에 얼마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액 삭감됐던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25년도에 80억 기준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때 하반기이기 때문에 절반인 40억이 국회에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80억인데 지금 현재 내년 예산 72억을 예산을 지금 올린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다음에 특경비는 추경이 506억인가요? 506억이었는데 그것은 전체, 원래 25년 본예산에 이 돈이 그대로 나왔던 건가요? 25년도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그때 대략 507억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김기표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특경비는 전액 삭감된 것이 추경에서 거의 그대로 원복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 추경이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건 좀 빨리 나갔고. 그러니까 소급해서 다 지급됐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지금 특경 추경이 506억 나간 것이 원래의 예산안, 2025년 예산안의 원금이었고, 원래 금액이었고 그것을 486억으로 좀 깎은 채로 예산을 올린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2025년에 506억으로 했던 것을 지금 486억으로 깎아서 올린 이유가 뭐지요, 특경을?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이번에 특활비하고 특경비를 정부 차원에서 대체로 10%씩 감액한 금액으로……

○김기표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린 건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특활비도 역시 80억인데 10% 감액해서 72억 올렸다 이런 거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특활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규정은 정해져 있지요. 무슨 보안이나 수사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상 국가기관이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틈새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뭔가 항목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용성이 좀 넓은 자금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게 너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증빙이 전혀 없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증빙 증빙 요구했던 거고, 그것이 현대에 와서 당연히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투명성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특활비를 지출한 사람이 완전히 그냥 무방비로 자기 술 먹는 데 쓰고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효용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공직생활 하다 보면, 공직 업무를 하다 보면 존재한다고, 저는 그것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자료를 최소한으로, 문제가, 보안이 지켜지는 범위, 다만 그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은 계속해서 국가기관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보장된다면 저는 특활비나 이런 것은, 기준의 아주 무도한 어떤 수사를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면 그 부분은 보장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동안 저는 특활비에 대한 입장이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주진우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공소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 제가 국감 때 안미현 검사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도 생각 못 했던 실무적인 쟁점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제한 때문에 많이 얘기를 못 했는데, 가령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에 의해서 인치 장소가 검찰로만 되어 있는데 그 수배자가 잡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검토되어야 되는 쟁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치 장소를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치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공소청 관련해서는, 특히 공소청 관련된 법안이랑 지금 행안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수사권이나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인력도 다 달라지고. 솔직히 지금 논의하는 게 사실은 거의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과연 몇 명이 공소청에 남고 몇 명은 또 중수청으로 가는지, 더더군다나 중수청도 또 선발권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온다고 해서 다 받아 주나요? 그것도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은 고용 유지나 정년까지는 보장이 되는데 정년 보장되는 사람을 중수청에서 안 받는 인력들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도 생기고.

친자 확인 소송부터 시작해서 검사의 기본적인 역할들하고 다 충돌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가 언뜻 보니까 법안을 한 몇백 개 바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법안 준비 작업이랑 이런 게 지금 검찰이 총력을 모아도 저는 1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일단 실무상 어려움에 대해서 검사들한테 좀 취합을 하십시오. TF를 만들어서 하겠지

만 한두 명이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대규모 TF가 필요한 것이고, 이왕 법안이 폐지됐는데 국민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저도 실무를 많이 해 본 사람인데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보고 맡아서 1년 내에 하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상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활비의 문제는 사실 그것과 연계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재판에 특활비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재판하는 데도 특활비를 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사활동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 지금 공판부에 배정하는 특활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 규모에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그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주진우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일선 검사장을 할 때는 그와 같은 활동에 지원한 바도 있었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원했던 사례는 제가 알겠는데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니까 솔직히 냉정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부터, 저는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유지돼야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만 한다고 하면 갑자기 재판만 하게 됐는데 기존의 특활비보다 3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대국민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체 특활비 중에서 공판부에 배정됐던 비용이 얼마 정도이고 그래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기능이 개편됐을 때, 새로운 수요가 뭔가 창출됐을 때 거기에 걸맞춰서 예산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를 10억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50억이 든다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부분도 법무부 차원에서 차관이시니까, 이게 큰 틀의 협의는 미룰 게 아니라 큰 틀을 빨리 결정해야 돼요. 보완수사권부터 시작해서 큰 틀의 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됩니다. 일단 당장 1년 뒤에 살인죄 저지른 수배자가 나타나도 풀어 줘야 되는 상황이 1건이라도 생기면 그것은 정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살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차관님, 예산을 제출하려면, 저도 법무부에 근무할 때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늘 요구하는 게 ‘시뮬레이션은 해 봤냐, 해 가지고 그 결과 몇 명이 줄고 몇 명을 전환시키고 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고 이걸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때도, 저희가 사실은 실제로 해 놓은 것이 없다,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검찰청이 그대로 온전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분리가 돼서 공소청·중수청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 봐 가지고 조직은 어떻게 되고 또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또 전산망이라든가 이전비 이런 것 쭉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신

청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어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중수청 조직을 어떤 규모로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또 중수청의 수사 범위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이성윤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중수청하고 공소청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중수청 지부를 몇 개, 지청을 몇 개 만든다 이건 대충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법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 나오고 10개로 하면 얼마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조직 인력을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 가지고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나중에 해 보니까, 예산을 만약 예비비로 할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법정부 TF에 각 부처 담당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과 조직, 예산 부분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윤 위원** 법무부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지금 예산, 인력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마 이걸 분석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백지수표 두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가지고 올해 예산 확정될 때까지,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정을 시켜 가지고, 확정은 아니고 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 가지고, 예를 들면 2개 이렇게 나누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좀 유형화시켜서 해 보면 어떨까.

지금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요 앞으로 나눠진다는데 예산도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있고 TF에서, 추진단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하겠다, 아니, 지금 보완수사권이 주어지면 얼마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 계산이 안 됩니까? 보완수사권 한다면 뭘 산정하고 있는지, 대충 수사관 1명이 필요한지, 수사관은 없어도 보완수사권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망 분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그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짜 가지고 대충 대략적인 비용은, 세부적인 비용은 아니더라도 그걸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경비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특활비가 지금까지 의심을 받았고 특활비가 갖는 부정적 인식은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활비 성격 중에 격려성으로 주는 게 많잖아요. 열심히 수사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특활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 특경비를 해 줘도 수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또 검찰 수사관들도, 검사들도 특경비를 배정해 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특활비에 대해서 부담감 또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요. 특경비나 업추비로 좀 전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새로, 이재명 정부 또 2026년 10월 달에 새로운 두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정말 특활비를 이제는 최소화시키고 특경비나 투명한 걸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면 어떨까 해요.

이 부분이 예산 심의에 들어온다니까, 또 특활비 72억이나 듣다 하니까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특경비로 가도, 업추비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중수청으로 직접 수사 기능이 분리되기 때문에 인력과 조직이 축소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국회 예산 심의라든지 절차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은 그 안을 상정하고 안을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시점이 되면 필요시에 관련 부분들을 이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중수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 인력, 시스템, 전산망 등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지금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비비 반영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활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내역 중에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특활비 이게 실제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특활비를 톱다운으로 다 떼 주잖아요, 대검 쥐 가지고. 대검 총장한테 주고 총장이 집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특활비도 이제는 다른 예산과 같이 지금 필요한 것, 앞으로 필요할 것, 매월 법무부에 요구하게 하고 법무부에서 그에 따라서 지급하면 어느 정도 투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도 적어질 거다, 내년 특활비도, 어느 정도 액수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집행 방법을 다시 한번 바꿔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도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 보텀업 방식으로 집행하는 방안들을 지금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야 특활비가 정말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도 특활비와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 진짜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특활비 안 쓰는 게 최고예요. 특정비로 하고 필요하면 진짜 최소화시키고 집행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특활비 영수증 내놓으라는 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장경태** 말씀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검찰국 관련해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의견을 냈는데 제가 낸 취지는 종전부터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법무부에 꼭 기밀을 요하는 특수활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2025년 예산을 두고 당시 야당이 정말 이것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럴 때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살리는 그 모순된 형태를 보고 일단은 삭감의견을 냈는데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삭감의견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특수활동비 또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이미 벌써 사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동부지검. 어차피 또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밝히기로 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지키고 또 거기서 지금 우려하는 그런 선에서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셔서 우리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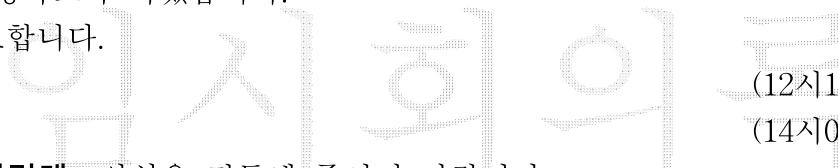
지금 법무부에서 특활비·특경비 관련된 제출을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어찌됐건 조금 미흡한 부분을 또 보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업추비는 일반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하겠습니다.

국내외 여비에 대해서도 오늘 저녁까지 가능하면 좋고요, 또 어려우면…… 수요일까지 넘어가면 서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활비와 관련돼서도 지금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관련된 사안을 참조하셔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후 한 바퀴 돌고 아마 저녁 쯤에 검찰국 의견을 한 번 더 듣고요, 다음 다른 부처들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 0분에 속개하여 법원행정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차장님, 지금 법원의 업무추진비가 몇 억 규모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항목이 세부적으로는 240항목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게 240-01로 사업추진비, 240-02로 관서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데요. 전체 업무추진비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관서업무추진비가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대법원장·대법관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법원장·대법관 관서업무추진비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40억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계속 40억이었다가 24억이었다가 40억이었다가 왔다 갔다 보고한 건, 저희한테 국회에 보고했던 사실관계가 좀 오락가락했던 건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 심사자료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있고요, 또 법원행정처에서 물론 자료제출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업무추진비와 특경비 또 국내외 여비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검과 감사원이 특활비·특경비를 제출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당

했던 적도 있고 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도 20% 일괄 삭감했던 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법무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련된 사안으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처우개선이라든지 R&D, 교육연수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액이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증빙 관련되어서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용권한도 당연히 사용권한은 있다고 생각하고 비싼 밥을 먹었나 안 먹었냐는 저희가 형사고발할 사안도 아니고 절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론 언론에 제공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비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과정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절제하고 자정작용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의 평가보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제출하시고 안 되시면 다음 주 수요일이 있기는 한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사실 심사라기보다는 거의 의결에 준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예산 심사에 대처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박병섭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견이 있는 사항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의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체 예산 내역, 집행 총액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감액 규모와 관련하여 관서업무추진비 41억 6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50%인 25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대법원은 매 분기별 관서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과 분개내역 등을 공개한다’라고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의 특정업무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비목에 대한 전체 예산 내역, 집행 총액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감액 규모와 관련하여 특정업무경비 전액인 200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50%인 100억 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 분기별 특정업무경비 집행 세부내역과 분개내역 등을 공개한다’라는 부대의견(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4번 일반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 인건비와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증원 결정된 재판연구원 94명에

대한 인건비가 미편성되었으므로 77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5번 본부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미준수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 등에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년 대비 증액분 18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법업무전산화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사법정보화기반구축은 사법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안정화하는 사업으로 네트워크 등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2024년도 불용액을 감안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법업무시스템 구축은 AI 기반 재판·양형 플랫폼 등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AI를 활용해 가짜 판례, 혀위 인용 등이 포함되어 작성된 변론서 내용을 검증하는 AI 변론서 스크리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세 건의 부대의견이 있는데 첫째, 8페이지입니다. 대법원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사고이월을 방지하고 연내 예산의 전액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고 둘째, 대법원은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양형기준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가한 자료를 학습시킨다는 것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법원은 재판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의 과업 조정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과 새로운 대국민 사법 지원 AI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는 방안의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의 소송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AI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7번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기타운영비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임차료 등인데 26년 전산장비 임차료 예산액이 실제 집행 예정인 금액보다 과다 편성되어 있으므로 2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1번, 전문재판 운영과 관련하여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구)서울회생법원 공간 재배치는 캠코양재타워에 이전될 서울회생법원이 사용했던 제3·4 별관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인데 2026년도 예산안에 본관 공간 재배치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211억 9600만 원을 법원시설관리 등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등을 위한 예산 211억 9600만 원을 법원시설관리 등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법원시설관리 등 세부사업에 211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등기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 필수항목 지출에 어려움이 있어 25년도 필수항목 지출 등을 위하여 공자기금으로부터 300억 원을 예수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26년부터 예수원금 300억 원을 10년 분할상환할 계획이므로 26년도 등특회계 세출예산에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사업을 신설하여 예수금 원금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항목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26년부터 예수원금 300억 원을 10년 분할상환할 계획이므로 26년 등특회계 세출예산에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을 신설하여 예수원금에 대한 이자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련 내용입니다.

15번, 법률구조단체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수요 증대 및 법률구조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 규모로 하기 위하여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25년 계획액도 상당 부분 미집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향후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보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 비용지원 계획안의 적정 소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건수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18번 국선변호료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국선변호료 지원은 일반국선변호인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보수를 5만 원 인상하기 위한 50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전담국선변호료 지원과 관련하여 2008년 이후 동결된 국선전담변호인 보수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증액 규모와 관련하여 보수 100만 원 및 사무실 운영비 60만 원 인상을 위한 52억 6100만 원 증액 의견과 보수 100만 원 및 사무실 운영비 30만 원 인상을 위한 42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두 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은 대법원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미지급 이월금 225억 6600

만 원을 국선변호인에게 조속히 지급하여 일반 국선변호인 보수 연체를 해소하고 향후 이러한 보수 연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대의견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기본보수액의 50%에서 80% 범위에서 보수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해당 예규를 기준과 같이 재개정할 경우 현행 예규 시행에 따른 예산 감소분을 원상복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견 제시 등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19번과 20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19번은 대전회생법원 청사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활용될 예정인데 30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 14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번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이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1번과 22번은 기타 사항으로 대법관 증원 계획에 따른 예산에 관하여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하급심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청사 신축이 최소 8년간 1조 4000억 원이 소요 예정이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려는 것은 현법상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항목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나요?
- **소위원장 장경태** 하나씩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어요?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
- **소위원장 장경태** 그 부분은 한번 다 하고 나서 위원님들 의견은 단위별로 했는데요. 실국별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신대로.
- **송석준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시간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하면……
- **소위원장 장경태** 하나하나 할까요?
- **송석준 위원**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 **소위원장 장경태** 편하신 대로.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표 위원** 바로 들어가시지요.
-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1번 총괄부터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사이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부대의견에서 기재해 주신 것처럼 분기별로 관서업무추진비와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집행 세부내역과 분개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부대의견은 자료상으로는 불수용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드렸

고 일부 자료는 아직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성실히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제시해 주신 감액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제고를 요청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제출하신 내용을 보고 토론하시면 좋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대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있는 일반회계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4번 일반 인건비 부분은 재판연구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인데 이 증원 결정이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을 많이 받아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저희 진행 경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헌법기관 최초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다섯 분을 선발해서 현재 일선에 배치를 했고요. 그 외에 장애인 고용 현황도 2023년 대비하면 12명 정도가 증가되는 등 크게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도 저희가 고심을 해서 한국장애인협회와 심포지엄도 하고 여러 가지 연락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우리 법원 내에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직역을 발굴하고 있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작년에 이와 같은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매년 7억씩 늘어나는 것이라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라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그 부분에 많이 반영이 돼서, 물론 고용부담금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작년 대비 한 1억 정도만 늘어나고 있는, 증가 추세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법원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과거 실적을 보고 지적은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장애인 고용 상황이 굉장히 호전이 되고 있고 또 대법원 측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제가 일단 이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억지로 막 다 갑자기 고용을 늘려라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 필요로 하는 부서도 과잉해서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처들이 그런 고심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정말 근무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더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에 정답이 있으니까요.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성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번 사항 감액 의견 있었는데요. 부처 의견이 불수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성윤 위원님이 감액에 대한 설명하시고 나서 부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6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신 거지요, 이성윤 위원님께서?

○**이성윤 위원**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불용액이 계속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감액를 요구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사실 법관이 증원이 되고 재판연구원도 상당히 증원이 될 예정이라 이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소요될 수가 있어서 내년에는 불용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게 매년 생기는 문제잖아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기준에는 불용액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판사도 170명 정도 증원이 되고 재판연구원도 94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이성윤 위원** 그러면 청구액이, 법관 증원이 민주당 안에 의하면 대법관도 늘어나고 연구관도 늘어나고 법관도 증원되면 연례적으로 청구했던 그것보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불용액이 생기니까 문제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생길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 말씀 들어 보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불용 행위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 말씀드린 것은 법관 증원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법관이 170명씩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그 부분을 통과된 법률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부분의 불용은 저희가 줄일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 어떻게 철회하시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마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산이.

○**송석준 위원** 저도 한 마디.

○**소위원장 장경태**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여기 보니까 사법업무시스템 구축 AI 기반 재판·양형 플랫폼 등 관련해서 새로운 변론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스크리닝 시스템 도입비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 문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변론 내용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원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ISP를 한번 진행을 해 본 다음에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될지를 추산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1억 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ISP는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돈을 가지고, 1억 원 가지고 전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한 ISP 사업을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경원 의원실하고 소통해 보셨어요, 의견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직까지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핵심은 지금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1억 원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ISP 정도만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1억 원을 청원하면 사실상 그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아주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그러면 ISP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실무진의 의견은 ISP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저도 좀 궁금한 게요 나경원 위원께서 이걸 제안을 했는데 가짜 판례나 허위 인용 등이 포함된 AI가, 이게 이런 겁니다. AI가 변론서를 작성했느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작성해도 변론서 내용이 정확하면 재판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AI가 작성을 했는데 허위 판례를 인용한다든지 허위 문헌을 인용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거를 그런데 AI를 결론 낸 시스템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직접 원문을 찾아볼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남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AI가 썼느냐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저도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취지 아닌가요? 말씀하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은 AI가 작성은 했다고 해서 그럴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맞느냐 틀리느냐……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결국 사실이 맞나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AI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지였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될지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ISP 정도 할 수 있다……

○**소위원장 장경태** 나경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 구축 용역 하려면 이 비용으로 안 된다는……

○**김기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송석준 위원** 적어도 이렇게 만약에, 제안이 됐으니까 ISP 정도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고민을 한번 같아해 보고 이게 충분히 필요하다면 추후에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ISP를 하는 조건으로.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어떻게, 이 1억 증액 의견은 그냥 철회해도 될까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되 그 조건을……

○**소위원장 장경태** 한번 그러면 이거를 나경원 위원님……

○**송석준 위원** 사업을 본 사업이 아닌 ISP용 그런 용역비로.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지금 그것밖에 못 한다는 거지요, 사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AI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AI가 결론 내서 갖고 왔는데 허위로 하면, 그래서 뭔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실 저희 법원 내부적으로는요 이렇게 허위의 변론을 제출했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원 내부에 TF를 최근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TF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작은 하고 있는……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결론을 낸 다음에 이걸 예산을 해야지 제가 보기엔, 그렇잖아요. 저 AI로 결론 냈는데 또다시 그걸 확인해야 된다면 무의미한 어떤 예산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의논해서……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이 부분은 김기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TF를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이걸 AI로 정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실에 가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진행 경과를 보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저는 이런 AI를 활용한 범죄 내지 또는 어쩌면 사법부 입장에서도 AI를 선용,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이제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업무량이 증가하고 보다 더 다양한 이런 숨어 있는 정보까지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명히 AI와 관련해서 사법부 차원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TF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 TF에서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서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확보해 주면 이거를 갖고 아까 ISP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연구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시스템 구축하고, 이걸 갖고 AI 여기서 요구한 걸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고민을 위한 지원비로 이거를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게 어려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는 걱정되는 것이 이제 용역비 1억 원이 책정이 돼버리게 되면 1억 원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어렵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송석준 위원 그래서 그건 수정을 해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AI 기반 재판양형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그러면 너무 적은 예산이라 이거……

○송석준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일종의 진단비 관련된 ISP를 한번 해 보는 그런 비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소위원장 장경태 그런 취지로 제안을 주신 것 같으니까요. 설명을 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일단 이거 보류해 놓고요. 수요일 날 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리고 이성윤 위원님이나 박은정 위원님 주셨던 그 부대의견은 저희가 전부 다 수용을 하고요.

김기표 위원님이 주셨던 방안에 대한 마지막 부대의견이 9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AI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은 사법부 내부용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사법부 내부용 하는 시스템을 과업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너무나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물론 지금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안이 A안과 B안을 비교검토해서 도입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진행되는 경과는 일단은 시스템이 내부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예, 그러면 뭐……

○소위원장 장경태 그래도 이 부대의견에, 선택적인 부대의견을 주셨으니까 이 제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셨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셔서 한번 김기표 의원실하고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수용인데요. 그 내부에 담겨 있는 의미만 좀 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소위원장 장경태 여기 부대의견이 막 무리한 부대의견이 아닌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약간 선택적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앞에 7페이지, 그런데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이 이월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85억 중에 72억이 이월되면 집행을 못 하셨……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지금 유찰됐나요 아니면, 7페이지 맨 밑에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실무자께서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이게 응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이월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렇지요, 유찰 사유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지금 불수용 의견을 주신 게 일단……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7항의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부분은 저희가 전산 장비 임차료가 사실은 정확한 리스 금액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였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2억 6000 감액이요.

그다음 11번에 지금 전문재판운영과 관련된 감액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님 혹시, 공간 재배치 관련된 감액 의견이셨는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 부분 저희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공간재배치를 할 때 회생법원의 대상이 본관과 3·4 별관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공간재배치를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3·4 별관만 대상이 되고요. 본관에 관해서는 2027년에 재배치를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본관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한 13억 정도를 지금 감액 의견 수용하시겠다는 건가요? 30……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3억 2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3억 2000이면 추계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만 감액을 하기 때문에 3억 2300만 원 감액 의견 수용……

○소위원장 장경태 8억 4000만 원 자산취득비 총액에서 공사비 감액 비율 38%에 준해서 지금 3억 2000 정도를 감액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의견 먼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저희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성윤 위원 예, 수용하는……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3억 2000 감액 정도로 수용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10번, 저는 생각이 어차피 이게 약자들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진술조력인 제도.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고 이제 깎일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 돈이 남아도나 보지요? 이게 왜,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불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1000만 원 깎는 거예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이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조력인이 상근 진술조력인이 있고 비상근이 있는데 상근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판에서는 비상근 진술조력인일 때 법원에서 예산을 하는데 지금 상근 진술조력인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주로 상근으로 이

용이 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삭감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내년도 대법원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게 비상근으로 법원에서 이렇게 이용도 했지만 기본적인 거는 법무부에서 상근으로, 그래서 그게 부족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원래 상근이 이제 충분히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런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그래서 지적한 사항을 수용해도 사업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 원 예산이 2000만 원 아니에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래도 집행을 보통 한 900, 600 이렇게, 1000만 원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셨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의견 혹시, 수용이니까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넘어가도……

13페이지에 있던 증감 연계 사업인데요 회생법원 운영 역량 강화에 지금에서 211억 정도를 원래 감액해서 이전하는, 법원시설 관리로 이관하는 사업 증감액연계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의 11번에서 감액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감 연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병섭** 이 취지는, 현재 2026년도 예산안에 전문재판 운영 세부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211억 정도의 예산을 14페이지에 있는 법원시설 관리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이성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다만 조금 전 논의하셨던 자산취득비 3억 23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11번에서 총 감액 금액은 211억 9600만 원이 아니라 208억 7300만 원이 돼야 되고요. 14페이지 12번에서 법원시설 관리 등에서 증액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208억 73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다 이해하셨지요?

법원 의견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증감 연계만 된다면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비목만 바뀌는 거니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실 10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진술조력인 제도 이게, 아마 상근 진술조력인이 없는 동네들도 꽤 있나 봐요. 그게 취약 지역이 있는 거 같던데 그런데 이를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상근이라도 활성화해서 좀 더 활용할 그

런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고 계시는 건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사실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하면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성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지금까지 또 불용됐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왜냐하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수용한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저도 아까 집행률이 낮아서 장애인에 대한 그것을 삭감 의견을 냈다가 지금 철회했잖아요. 아마 이성윤 위원님은 역시 저랑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집행이 만성적인 집행 부진이니까 당연히 깎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러면 이 부분은……

○송석준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기회만 좀 더 주고 홍보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의지가 있는데 그런 인프라는 약한 상태에서 그냥 안 쓰니까 자꾸 자르다 보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더 약한 위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위원님, 같이 가능하시다면 이것은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촉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증액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고 저희가 불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더군다나……

○송석준 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더 제출……

○이성윤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계획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바로 연락해서 의원실에……

○이성윤 위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활용 더 많이 하도록 하겠다,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송석준 위원 그럼요. 이것은 활성화해야 할 제도이니까……

○김기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이성윤 위원님께서 철회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23년, 24년 사건 수도 64, 73건, 관계인 수도 71명, 78명인데 이렇게까지 사건이 많이 늘어도 집행이 많이 안 되네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근 진술 조력인, 법무부 예산에 의한 그분들이 사건을 많이 담당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포함해서……

○김기표 위원 그런데 상근이 없는 경우도 있고……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있을 수 있으니까……

○**김기표 위원** 법무부에서도 그것에서 증액을 지금 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갖고 있는 게 맞겠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특별회계에 관한 의견 있으십니까? 법원 다 수용이라서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 300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30억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여야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도 4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번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16번은 불수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사건에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위탁에 대한 비용이 많이 불용이 되고 있어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도 법원에서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위탁기관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위탁기관을 좀 더 확대한다면 이 비용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다면 일부 감액은 저희가 수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일관된 기조인데요. 이런 약자를 위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소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은 예산을 다 집행하고 부족하니까 증액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 할 뿐인데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런 거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희들이 수용, 불수용 문제가 아니고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집행하고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내서 이거 유지시켜 달라든가 더 증액시켜 달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원의 확장 영역이 가정보호 사건이랄지 이와 같은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작부터 많이 해 오고 있는데요, 좀 더 양해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불용액을 주지 말고 그것을 더 찾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송석준 위원**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부처별로, 국가 기관별로 자기 고유 영역이 있고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하거든요. 사실은 사법부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주 임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복지부가 할 일 또는 관계기관들이 할 일들이 명쾌하게 딱 잘라지면 좋은데 실제는 묻어 있고 서로 어느 기관이 같

이 다 상대방의 다른 기관의 역할도 일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여기를 수행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약자들, 이게 바로 그런 영역들이거든요. 약자들을 위해서 복지 영역은……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일 거예요. 이거 정말 작으면서도 잘못하면 지적을 받고 또 팬히 자꾸 이런 일 들어나면, 본업이 아닌 부업이 들어나면 귀찮고,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법원행정처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본래의 기능의 충실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서 다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법원 재판과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약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 내에 업무의 중점을 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법행정 부문에 좀 우수한 인재들과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커버를 해 주신다면 정말 관계기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을 위한 적극 사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것도 그렇고 이성윤 위원님도 계속 지적한 게 반복되는 게 그만큼 사법행정에서 이런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절실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런 약자들을 위한 사법행정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또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인력을 보강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에 관해서는 저희 전체 사법부 차원에서도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따끔한 지적들 저희가 깊이 새기면서 이 부분 좀 더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도 법원에 가정법원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후견적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큰데 그렇게 계속 불용액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는 정말 칭찬받고 지역사회, 소년, 약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법원이 그러면 신뢰도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면 제가 이거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이 부분도 지금 보수액의 50~80%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불수용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이 의견안이 부대의견안으로 나와 있어서요.

이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선변호 비용이 과거 한 4~5년 전에서부터 계속 한 2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선변호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하라라는 요청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일반 국선을 국선 전담으로 많이 전환도 시키고 또 한 가지가 대법원의 국선변호가 일반 국선변호

하고는 달리 업무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 자구책을 마련했고 이번 예산에서는 미지급한 금액인 170~18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 주셔서 이월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일환으로서 이와 같은 예규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 취지는 우선 대법원의 사건 자체가 서면심리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사건하고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고요. 대법원의 일반 국선 사건의 수 비중이 전국 법원 중에 가장 많습니다. 거의 10% 이상이 대법원의 일반 국선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올 8월 12일 날 예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서부터 대법원에 접수되는 국선변호 사건은 예규상으로는 감액이 50~80%로 돼 있습니다만 재판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현재 55만 원인 것을 한 72% 정도 수준인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와 같이 지급된 지가 한 두 달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규가 8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그리고 실제 집행이 두 달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랄지 아니면 변호사 협회에서 요구사항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이 예규를 바로 연내에 개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또는 시행 경과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이 예규 개정을 검토하라는 취지시라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가 60만 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55만 원인데요. 지금 5만 원 증액을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런데 그 중에 예규로 80%까지 그러니까 감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은 20%만 지급해도 된다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55만 원, 100%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5%~8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예규가 올 8월 1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최저 하한이 50%는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래서 80%고.....

○**소위원장 장경태** 그전에는 몇 퍼센트 레인지였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전에는 그냥 100%를 기준으로 해서 55만 원이 정액이 지급이 됐다면 지금은 그런 레인지를 두고 재판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72%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지급한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55만 원 줬는데 이제 40만 원만 줄 수 있게 된 거네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물론 사안에 따라서 어려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증액을 해서 100%에 해당하는 55만 원도 지급도 되고요. 원래 그 금액보다 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사실상 대법원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건들이 양형 부당을 다투는데 사실은 10년 이상이 아니면 양형 부당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은 필요적으로 국선이어도 사실상 서면 작성이나 이런 노력이 굉장히 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공판정에 직접 가야 되지만 공판정에 가지 않기 때문에 3심하고 똑같은 액수는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규를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시행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예규의 재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부대의견이라면 그것은 검토는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저는 이게 대법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 현실에 맞게……

○김기표 위원 그것은 대법원 의견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일단 그러면 부대의견을 어떻게 철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송석준 위원 수정을 해서……

○김기표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내가 낸 의견이 아니라……

○송석준 위원 그 예규 규정을……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규는 8월 12일 날 개정이 됐고 9월 1일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시행 과정을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보완을……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해결되겠네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규 시행 경과를 보고 그 예규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정도의……

○송석준 위원 그 정도로 수정하시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제도개선은 저희가……

○소위원장 장경태 일단 저희가 체크는 해 놓을 테니까요, 행정처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저희 예결소위에서 한 번 설명을 해서 그래도 상당히 이해는 하셨다, 이 정도는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 저희들도 의견이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하시면……

○소위원장 장경태 체크는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제 의견은 사선변호인들이 대법원에 비용을 조금 지급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사선변호인과 같이 맞춘다면 좀 깎는 문제는 왜 그런지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노력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런다 이런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두 가지 측면이 다 반영이 됐는데요. 원래 구성적으로도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서면심리가 이루어지는 측면을 고려해서 감액의 필요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게 됐던 것이 과거에 예산 200억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감액을 위한 자구 노력이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서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으로 해결을 해야지 깎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양형 부당은 기본적으로 상고 이유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적인 국선이기 때문에 그것만 쓰는 그런 국선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심, 2심의 100%, 60만 원까지 주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서 그립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 사건이 많아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김기표 위원** 형식적인 서면을 쓰고 같은 돈을 받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래서 대법원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심에서 예를 들어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첨예하게 다뤄지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다 이런 것은 좀 예외적으로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만 둔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부분 약간 형식적으로 쓰는 서면에 대해서는 100%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의견이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무튼 서면 작성할 때 복붙한다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한데 상고사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네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감액이나 또는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드렸을 텐데요 지금 부대의견으로 개진을 해주시고, 보면 ‘예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의 문구가 ‘예규가 개정이 되게 되면 원상복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전단에 해당하는 예규의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 부분은 조건부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좀 난감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이 정도는 가능하시겠네요.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예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추후 경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 정도는 수용하시겠네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게 사실 원상복구라는 부대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우신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일단 문구는 그렇게 해 놓고, 그래도 위원님들께 한 번 더 공유는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다음 19페이지, 아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담국선변호료 지원에 대해서 52억 안과 42억 안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선전담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청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처우 개선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국선전담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급여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좀 더 좋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훌륭한 자원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송석준 위원** 저도 의견을 수용을 해서……

○**김기표 위원** 저도 52억 원 안으로……

○송석준 위원 예, 큰 금액으로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52억 안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이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전회생법원 개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배려를 좀 해 주셔서, 증액 의견을 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해남지원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증액도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는 두 가지 안 모두 적극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동감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원행정처는 일단 다음 2회독 때 한번, 1회독 끝난 이후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그 전까지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면 심사가 가능하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소위 1차 심사 이후에 그리고 2차 심사 전까지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2차 심사는 아마 2시간여 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이나 또 시간이 좀 축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가 그냥 의결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상 대법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뵙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마무리 전에, 끝에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한 신동욱 위원님의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인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안 끝났는데?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저녁에 또 봐야 되는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 또 뵙네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아직…… 죄송합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꼭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그래야 오늘 저희도 빨리 퇴근할 수 있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잠깐 2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요. 정회하지 않고 휴식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세입 부문, 기타잡수입 비목에 2026년부터 실시할 것이 예상되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 대한 외부감사 수수료 수입을 세입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김기표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으로부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약 48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외부감사 비용에 대해서는 뒤의 세출 부분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수용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전부 다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혜진 다음 2페이지는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요금과 임차료, 2가지 비목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먼저 2025년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증액분,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6년 예산에서 증액분 1억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송석준 위원님으로부터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 효율 제고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 그리고 이성윤 위원님으로부터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기요금 산출 기준을 합리화해서 예산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액 의견은 불수용 의견 주셨고요, 부대의견은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대해서는 임차료 예산이 전년 대비 6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4개 지방사무소 임차료 증액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청사나 공공건물 활용을 통한 임차료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성윤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용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감사활동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장 이동 중심의 감사 출장이나 수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서 업무용택시비를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 비목에 2억 2800만 원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김기표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으로부터 있으셨습니다.

감사원은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업무협의 및 감사 관련 이견 조정 등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관서업무비를 지금 2024년 수준으로 1억 74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김기표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으로부터 있으셨고 감사원은 이에 대해 수용 의견 제시했습니다.

다음, 특활비에 대해서 감사원 특활비가 2026년 15억 19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그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으셨고, 또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집행한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이상의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일체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면적인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 위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송석준 위원님으로부터 있으셨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가 증액한 일부 지방이양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이를 위법 부당하다고 확인하였지만 지방이양 결정 전에 착공된 사업들 중에서 문화재 발견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총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집행 주체를 재정립해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꽈규택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송석준 의원님으로부터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사업 중에서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이 6600만 원입니다. 감사원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1명을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해서 연간 약 100에서 200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윤 위원님으로부터 자문 건수와 분야를 고려한 감사권익보호관 인력풀을 구축하고 절차적 권리 보장 수준 파악을 위한 비식별 지표 관리 등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입니다.

동 세부사업에 감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2억 4100만 원 관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표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이관하고 그 비목 역시 관리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에 대해 감사원도 수용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협력강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외부감사에 대한, 앞부분은 세입이었고 이것은 그 외부감사를 위한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4900만 원 정도의 비용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김기표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으로부터 있으셨고 감사원도 이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1페이지에 있는 세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증액분 삭감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2024년도 실적분이 7억 250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OASYS 시스템을 신규 구축했는데 그 서버가 전기를 많이 먹고 있어서요.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담당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나요? 소통 좀 해 보셨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소통했고요. 2024년도 실적분이 7억 2500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2026년도의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운 기조실장직무대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적분과 2025년 8월부터 10월 실적분을 봤더니 전기 요금이 19.8%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을 저희가 수용하게 되면 내년도에 전기 요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송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된 상황이 제대로 실무진들한테 투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을……

○**김기표 위원** 여름에 일과 끝나고 에어컨도 좀 틀 수 있게 하고 해 줘야지, 그건.

○**소위원장 장경태** OASYS는 지금 가동 실시를 했나요, OASYS 시스템?

○**감사원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운** 저희가 원래 서버를 자체 운영하지 않다가 클라우드시스템이 되면서 서버를 자체 운영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정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OASYS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가동하는 건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운** 예.

○**소위원장 장경태** 그렇지요? 올해는 아직 가동 안 했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운** 예, OASYS와는 별론으로 해서 계획을……

○**소위원장 장경태** 별론이고요, 그것은?

○**감사원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운** 예.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안인데요. 감사원 특활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방안 등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할 것이라는 안과 고위감사공무원 가급에 대한 요구안들에 대한 불수용 의견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 둘 다인지 아니면 하나인지 혹은 문구 수정인지에 대해서 감사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도, 사실은 예산을 요구할 때도 금액만 있지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그러면 ‘집행내역을 내놔라’ 이것은 좀 사실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증빙 없이 쓰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행계획서, 영수증…… 그러니까 수령증입니다. 영수증하고 어떤 데에 쓰겠다는 집행계획은 낼 수 있지만 활동보고서나 그런 것을 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활동비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 저희가 예결소위는 작년과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소위 지금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수준……

그러니까 대검 같은 경우도, 검찰 같은 경우도 일자와 집행금액에 대한 영수증 같은 경우는 또 어디, 어느 하급기관에 지급되는지까지는 저희한테 다 보고를 했거든요, 검찰 특활비도.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는 가능한데……

물론 활동계획이나 보고까지 구체적으로 감사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래서 저희도 그에 준해서 문안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게요……

○김기표 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하지요, 부대의견 단 위원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특경비나 특활비의 존재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기밀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내라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특활비를 각 부서마다 달리 받을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적 유용이 안 되는 한도에서, 그러나 기밀성이 유지되는 그런 양쪽을 절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받아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하고 제 의견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 고위공무원 가급까지 지급 요청도……

○김기표 위원 예, 그것도……

○소위원장 장경태 저희가 지금 검찰은 하급 기관까지 받았는데, 직급별 특활비 지급내역까지는 아직 요구는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지요.

○김기표 위원 저도 그것까지 굳이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를 절충할 수 있는 안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위의 부대의견 중에 활동계획서와 활동보고서를 뺀, '감사원은 특활비를 예산지침에 따라 블라블라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영수증, 집행확인서) 등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할 것' 정도는 수용 가능하시지요, 부대의견으로?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영수증하고 집행내용확인서가 결국은 활동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영수증하고 지출서류'로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혹시 특활비 집행내역,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자료 보셨지요, 양식?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소위원장 장경태 집행일자와 집행명목과 금액까지는 공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래서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안 들어가게끔, 아니면 '땡땡땡' 처리를 하든지 그것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어떻게, 그러면 5월 31일이나 기한 지정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김기표 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철회, 왜냐하면 다른 의도로 한 면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철회하고 제가 다른 측면으로 좀 다뤄 보든지 하겠습니다. 예산에서는……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 위에 있는 문구 중에 일부 수정을 해서 문구를 주시면 제가 말미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뒤에서 실무진이 이 문구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방금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김기표 위원 한 가지만 좀 첨언해서 넣으면요. 제가 요구했던 것을 철회하는 것은 이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그 의견을 철회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가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여지로서 남겨 두면서 제 의견을 철회합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셔야지요. 하십시오.

○**김기표 위원** 자료 요구는 제가 필요할 경우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여지를 남겨 놓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다음, 송석준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사항……

○**송석준 위원** 여기 보니까 말한 취지가 좀, 이게 요약이……

이것 안건을 행정실에서 만들었지요?

○**전문위원 박혜진** 예.

○**송석준 위원** 이것 요약이 뭔가 좀 왜곡이 된 것 같아.

○**전문위원 박혜진** 죄송합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보면 감사원의 관련 예산을 다, 전액 삭감하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그겁니다. 이것 좀 수정을 해 주세요, 부대의견을.

○**전문위원 박혜진** 예.

○**송석준 위원** 우선 이번에 정책감사는 어떻게, 새 정부 들어와서 다 전면 폐지하기로 했나요, 어떤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이게 전면 폐지는 아니고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입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사업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폐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라도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되잖아요, 이미 집행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존중할 것은 존중하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그래도 따져 봐야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악순환의 반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난 정부에서 한 것 중에,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혹시 예를 들면 현금 살포성 이런 예산 지출이……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응급 처방으로. 우리 인체가 전체적으로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가장 소화되기 좋은 엑스레이를 딱 처방하는, 아주 현금…… 즉각 효과 내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지요.

그런데 큰 규모의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재정사업은 이렇게 일과성으로 살포하고 나면 그게 전후방 연관 효과가 없고 즉자적인 효과기 때문에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지요. 그런 예산은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지속되거나 너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엄청난 재정 낭비가 오고 또 결국은 재정 중독증 비슷한 증세가 와 가지고 그런 식의 재정을 계속 주지 않으면 그 많은…… 그것을 수요로 했던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존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가재정이 감당 안 되고 장기적인 다른 중요한 투자 재정 지출 여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재정 운용

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원의 주 기능이 감찰 기능과 회계 감사 아닙니까, 회계 검사?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잘못된 국가재정 운용 또 그런 지출을 감시해야 될 감사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너무나 좋다고 해서…… 그런 반복적인 재정 계획이라든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책적 감시는 계속해야 되는 거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말씀을 좀 다듬어서, 그래서 재정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과도한 현금 살포성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감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계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그래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좀 문안을 다듬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좀 모호해서 그런 데요. 하나 좀……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는데 사업과 연계되면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이게 어디까지가 정책감사고…… 보통 대부분의 정책이 결정되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다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집행되든 뭔가 액션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을 결정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었을 때, 낭비가 될 때 회계 부정을 한 사람만 처벌하고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안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다 한 사건으로 끝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존에 감사하던 건데 이것만큼은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예를 한번만 들어 봐 주세요, 이것은 이제는 안 하겠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국회 감사 청구 들어온 사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이 와 있는데요. 그러면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의 문제입니다. 증원할 건지 줄일 건지는 결정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2000명이라는 숫자가 합리적으로 결정이 된 거냐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숫자.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통계를 좀 조작합니다. 자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통계를 좀 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가 적정한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도 과연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도출이 됐는지 과정……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2000명의 결정 과정에 통계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아는 건데 그러면 2000명 증원이 정책적으로 적정하느냐 아니느냐라는 감사 청구가 들어왔을 때 감사에 착수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가 그 부분이 아까, 그것은 일단 20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그 건은 감사에 착수할 사안이에요, 아니에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해요. 저는 저번에도 계속 설명하는 것 들었는데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제가 처음에 정책감사를 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지적이 맞거든요, 사실은. 정책감사를 줄인다면 줄인 만큼 비용이 합리적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인력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고, 하는 일이 줄어드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영역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 업무영역에 배치돼야 되고, 정책감사하는 부서가 있고 회계감독하는 부서가 있으면 부서 간의 인력 조정도 서로 해야 되고 이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감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된 것은 정책인데 통계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 볼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어요? 모든 정책이라는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 데이터가 조작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지는 다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아니, 그러면 아까 현금 살포 관련해서……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감사 왔는데 기존의 감사를 착수하려고 하다가 이제 정책감사 안 하기로 해서 딱 중단한 실질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것 딱 할 건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셨으니까 그리고 감사원도 거기에 동감해서든 명분이 어떻든 간에 ‘나 이제 정책감사 안 하겠어요’ 했으면 감사 하려다가 안 한 게, 중단된 케이스가……

기존에는 이런 것은 하던 건데 우리가 아래서 안 하겠다든지 이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를 들면 ‘3불 1한’ 정책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은 감사 청구가 들어와도 안 합니다.

○주진우 위원 뭐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3불 1한, 중국과의 그런……

○주진우 위원 아, 예.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3불 1한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들어와도 아예 감사를 안 합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런 논리대로라면 3불 1한 정책도 그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다 통계를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무슨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이 있거나 기본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3불 1한 정책이 나오는 거고 그 데이터가 조작됐으면 3불 1한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그런데 외교·국방 사항 관련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진우 위원 이제 외교·국방은 통계 조작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침을 따로 만들었어요?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는데요.

그 모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자꾸 설명하시는데 꼬이거든요? 이게 누구나 딱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눠 준 것에 대해서, 개인한테 얼마씩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단의 결정은 안 보지만 집행 과정은 보는 거거든요.

○주진우 위원 그건 기준에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그러니까 앞단을 안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책결정 부분은 안 본다는 겁니다.

○주진우 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APEC 외교 행사도 그 성과와 상관없이 집행 과정에서 비리가 있으면 봐야 되겠지요. 뭘 짓는데 공사비가 과다계상됐다든지 아니면 당연히 준비해야 될 걸 준비 못 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국제행사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간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하세요, 지침을 만들든 뭘 하든.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주진우 위원 지금 말이 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가 정치적인, 가치판단적 영역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정책감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대상이고 어떤 것이 대상이 아니냐,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그것 아닙니까?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 들 것이냐 용산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세종시로 옮길 것이냐 어떤 정책적 결단의 측면, 통치권자가 내릴 수 있는 정책결정의 타당성까지 따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부정·비리가 있었다든가 무면허업자에게 공사를 맡긴다든가 또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골프연습장, 사우나탕, 다다미방 이런 걸 둔다든가 이런 것들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원자력 관련된 정책에 불신을 가지고서, 오히려 큰 목표에 불신을 갖고서 이런저런 걸 꼬치꼬치 따져 가면서 전 정권을 괴롭히고 그 정책적인 결정을 비하하기 위한 그런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현 감사원에서는 그걸 하지 말자는 현 정부의 취지 같은 것들을 존중해서…… 사실은 윤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가능성 있는 부분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이제명 정부의 하지 말자는 주장 자체가? 그래서 아까 용산 관저 이전의 문제와 같이…… 아무튼 왜 그런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취지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 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박균택 위원님 말씀 되게 존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겨 가자는 논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감사에 착수해야지 개별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무슨 의혹 제기가 되면 착수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정부를 따질 것 없이 저는 감사의 예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일을 하는데 어떤 게 감사 대상이고 어떤 게 감사 대상이 아닌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큰 변화가 있으면 지침이 만들어져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이런 것들도 지침이 세부적으로, 죄명으로 결정돼 있든 뭘로 돼 있든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고 그렇게 외부 사람이나 내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견해가 다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기준이 아니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감사원 규칙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한 정책감사 정치도…… 그전에 그렇게 규정을 새로 바꾼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규정 아니에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아니, 기존에 있었는데 다만 단서조항에 아까 말씀드린 통계라든지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볼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어떤 부분은 감사 대상이 되고 안 되는지를 공무원들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새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기존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그건 모순이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입법화하고 규정을 좀 단순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감사원이 이재명 정부 시작되면서 뭔가 잘할 것 같이 하면서도 지적받은 것처럼 말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원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본래 우리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한정된 혈세를 모두 제대로 집행했는지 또 과정에서의 비리는 없었는지 공직자들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직무감찰, 이유불문하고 국민적 관심사 또 국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회계감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감사원의 그 기능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또는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받아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감사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게끔 감사원의 스텐스를, 태도를 좀 더 정제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사실 해야 될 걸 하면서도 이렇게 얻어터지는 거지요. 정치권으로부터 또 국민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원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다른 어떤 기관처럼 직무범위가 크게 변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국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니까. 중요한 건 어쩌면 여러분들, 당대의 감사원을 구성하는 기관장님과 구성원들의 언행 이것을 가급적 정제해서 이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정책감사를 안 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시기에 정책이라는 게 어디까지고 이런 끝없는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할 때는 해야지요. 정책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가 재정을 정말 심각하게 낭비를 한 사안이라면 왜 그렇게 그런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급적 앞으로 운영 방향 이런 것 정하고 그러실 때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정치적인 언

어나 스탠스를 좀 자제하라는 얘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지금 재정 중독, 이번의 소비쿠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잘 집행이 되고 성과가 많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만 이게 성과는 잘 안 나고 그 집행 과정에서 자꾸 비리가 노출이 되고 또 국민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볼 여지는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러는 것은 감사원의 고유 기능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순하게 해서 어느 정부든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게끔 감사원은 중립적인, 정치적인 편견이 아닌 국민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고 또 따질 건 따져 주라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 주신 제안을 근거로, 바탕으로 감사원에 부대의견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한번 보시고 또 의견 주시고요.

저는 총장님께서 새로운 감사원 그리고 기존을 탈피한 감사원을 꿈꾸시면서 굳이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 권한 등을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감사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아마 그 의미 속에는 정책결정권에 대한 감사, 소위 원전을 하고 싶은 사람 있고 하기 싫은 사람 있겠지요. 저는 정치철학이나 입법정책적 차이나 이런 것들 다 존중하는데요.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통계조작이라든지 뇌물이 오고 갔다든지 청탁이 오고 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향점을. 그런데 굳이 막 정책감사 안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다 포괄해서 정책감사라고 이해하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 전 정권만 털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굳이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소위원장 장경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이 제안 주신 안을 바탕으로 의견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지금 곽규택·나경원·송석준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감사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이 후단 쪽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이것은 저희보다는 재정당국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석준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문구를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 좀 다듬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제안 문구를 주시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게 약간 기재부 부대의견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의견을 좀 주십시오.

3번에 있는 부대의견안인데요 여기에 대한 감사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 제안 주신.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가 법무공단에서 매년 한 명씩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풀 부분은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면담을 몇 명 했는지 하는 비식별 지표 관리는 업무의 독립적인 수행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안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소위원장 장경태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문안 때문에 그게 불수용인가요?

저는 감사권익보호관제도의 정확한 의미가 감사원의 결정, 면책 결정이라든가 소명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연간 인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감사원 조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치를 땡니다. 제가 7대 신공 유병호 얘기도 했지만 과거 90년대·80년대 검찰·경찰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자문변호사 하려면 그냥 자문변호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감사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해 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구제 또는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감사원에 요구하고 이런 것인지,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운 실무자가, 기조실장직무대리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들의 변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이것을 다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감사원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운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봐요. 감사원의 감사 방법이 이렇게 문책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가서 공무원들 여론조사 하다 보면 감사원 조사 방법이 악랄하다고 다 그럴 겁니다. 잠깐 재우고 반복 질문하고 막 통치기하고 큰 걸 얻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 봐주고 조그마한 것 안 내면 감사받으라고 협박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고 오죽하면 판결문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국가배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가배상까지 할 정도면 이제는 감사원 감사 방법도 기법도 바뀌어야 할 때다. 포렌식도 무지막지하게 다 걷어다가 해 버리더만요. 이렇게 되면 감사원이 금방 불신을 받게 되고요 해체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또는 피감기관의 피감사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라면,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한 명이 이걸 다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객관적인 제삼자를 통해서 그 감사받는 사람들을 피해구제해 주고 또 잘못 조사해 가지고 국가배상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만들려면 이것 한 명 가지고 안 되지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식별 지표 관리 이런 게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제도라면 정말 국민들한테 권장할 제도예요, 감사원도 발전하고 국민도 보호되고.

검찰수사나 재판에서는 변호인 제도가 있고 또 법이 정비가 잘돼 있어서 검찰수사 받고 경찰수사 받고 이럴 때는 각종 권리구제 절차가 많잖아요. 헌법에도 있잖아요. 감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건 헌법에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무원들한테 너무 갑질을 했다. 그 대상이 1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100만 명 넘잖아요. 감사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악에 빙쳐 있다. 감사관들이 조사받으러 나오라 그러면 정말 밤잠을 설치고 전전긍긍하고 한번 조사받고 나면 또 언제 오라고 할지 모르고 말이지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월성원전 사건이 나서 조사받은 사람들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감사원 조사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직권남용뿐만 아니고 폭력으로 고발한 사람도 있어요, 협박. 이런 일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안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개선하라는 취지지, 예산 필요하면 예산 쓰십시오. 써 가지고 감사원 조사방법을 바꿔야 돼요. 유병호가 만들었다는 그 방법,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 유병호가, 타이거파가 저질렀던 그것 치유하지 않으면 공무원 사회에서 감사원은 영원히 정말 배척이 될 겁니다. 그런 충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위원님, 저희가 국정과제로도 인권친화적 감사절차 정비를 위해서 감사권익보호관제를 포함해서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권익보호관은 조사를 받는 피감기관들은 자기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감사위원회에 부의되기 전에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면 감사권익보호관이 검토를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사건을 설명하고 나면 권익보호관이 들어와서 ‘이 건은 저희가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렇습니다’ 해서 변호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논의가 들어갑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권익보호관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전현희 의원 사건 같은 것도 안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원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감사관제도 시스템화 시켜서…… ‘이것 검토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경찰도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문감사관 해 가지고.

이거 변호사 한 명이 해 가지고, 그것도 정부법무공단 소속의 변호사 한 명이 이걸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감 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감사원이 더 이상, 인권을 보호하는 감사 방법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하고 또 감사위원회 올라갔을 때 반대 팀에서, 피감사자 입장에서 이런 건 진짜 문제가 있다, 정말 공정하게 피감사자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해 줄 사람이 필요하면 한 명 갖고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되겠습니까, 한 명 가지고?

○소위원장 장경태 총장님, 이 의미의 취지를 좀 살려서 ‘인력풀을 구축하고 절차적 권리보장 수준 파악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이 정도의 부대의견으로 수정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성윤 위원님 어떠세요? 국회에서 개선안을 보고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으면 또 지적하셔도 되고요.

○이성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전체 불수용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송석준 위원님 등이 지

적한 사안을 우선해서 부대의견안을 좀 다듬고 마련하셔서 위원님께 충분히 건의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여비, 국외여비와 관련된 자료제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원은 오늘 저녁에 다시 보기보다는 총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일 날 한번 논의하고요. 그 사이에 감사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오늘은 대기하시지는 않으셨고 되고요. 심사의결은 수요일 날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재승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공수처 자료 1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1번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인데요.

공수처는 KICS 도입 이후 관련 예산으로 164억 원을 사용하였고 2026년 예산도 고도화 및 운영으로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통계 부정확 사유로 사건접수, 사건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또 통계 부정확 사유로 피의자 유형별 사건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또 통계대상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간 및 처리기간 기준 관련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예산 94억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송석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기관은 불수용이고요.

또 신동욱 위원께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사업 신규 편성 36억 5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구속영장 8건 청구해서 6건이 기각됐는데 수십 억 들여서 전자영장시스템 구축이 필요한가 의문이므로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불수용입니다.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관련해서 공수처가 디지털포렌식 분석 노트북 구매비용으로 800만 원, 복구장비 구입에 5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장비들이 없어서 수사를 못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부대의견으로 디지털포렌식 분석 노트북 및 복구 장비, 수사 장비 사용실적을 제출하라는 신동욱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요, 기관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3쪽,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과 관련되어서 위에 부대의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내부고발자 관련 예산에서 그동안에 최근 3년간 집행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도모하라는 김기표 위원, 이성윤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수사활동과 관련해서 택시비 4000만 원, 특활비 1억 1000만 원, 특경비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대의견으로는 특활비, 특경비, 수사

활동 택시비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신동욱 위원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끝으로 4쪽, 공판활동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공판역량강화와 관련되어서 검사 스피치 교육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판중심주의 대응 역량 강화와는 관련성이 멀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광규택 위원과 이성윤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부대의견으로 공판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내용의 공판 관련성을 높이고 교육대상 검사 규모나 예산 효율성을 다시 검토해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1페이지 정보화체계 구축부터 공수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첫 번째, 1페이지 관련해서 저희 공수처의 의견은 형사사법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예산은 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 및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 및 경찰 등 타 기관과 달리 예산상 문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별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비정형 통계자료를 자동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계관리가 미흡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계속하시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두 번째로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관련해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먼저 구속영장청구 8건 중에 6건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올해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공수처의 의견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사업은 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 및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36조 시행에 따라서 저희 공수처를 포함하는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통합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포렌식 분석 노트북과 복구장비 구매와 관련한.....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1번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범죄유형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현황자료를 송석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되나요, 혹시? 구체적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최대한 저희가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유형화해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런데 그 사건 상당수가 민원성이고 죄명이나 직업의 부정확한 기재로 인해서 정확한 통계 제공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소위원장 장경태 기타 사건으로 분류해도 되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 통계시스템 구축 소요 예산 20억, 2024년에 미반영되는 바람에 검찰과의 통계시스템 추출 부분이 조금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런데 이제 약간 다소 미흡할, 그러니까 약간 거친 자료일 수는 있는데요. 아주 정제된 자료는 아니더라도 의원실에서 요구했으면 제출해 주시는 게 좋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가급적 해 주시지요.

○**주진우 위원** 저도 몇 가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주진우 위원** 아까 전자문서법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예 내년부터 완전히 강제되는 건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종이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예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 아닌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긴 합니다마는 10월 10일부터는 전자문서법이 시행이 돼서 전송형 영장 이런 것들, 법원을 주도로 해 가지고 저희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공수처가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잘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진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비용을 너무 많이 안고 시작하면 공수처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송형 전자영장이라는 게 결국은 구속영장 이런 것을 법원으로 바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법에서 어느 정도 강제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따져보긴 하겠는데 전체 건수가 구속영장 8건도 아마 5년치일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렇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주진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압수영장 이런 등등 다 포함되는 건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사실은 지금은 영장을 가져가서 법원에 직접 접수를 하고 아마 전자문서법이 시행되어도 예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각 부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서류접수 시스템도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법원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차라리 수사인력이나 같은 돈을 쓰더라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수사를 배가하는 데 써야지, 영장은 지금 있는 인력으로 더더구나 사건범위나 수사대상이 좁기 때문에……

영장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청구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한 달 평균으로는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진우 위원** 대략이요. 한 자릿수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한 자릿수 많아야 두 자릿수일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출장으로 따지면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법원에 가서 접수하면 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급한데 먼저 써야지 이것을 몇 건 되지도 않는 것을 전자시스템 만드는 데 몇십 억씩 써버리면 나중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에 공수처 예산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나온 성과는 이거다라고 하면 그때도 통계가 놀라울 정도로, 제가 그냥 공수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언인데 실적이랑 격차가 너무 커요, 너무. 그런데 그게 지금 계신 분들의 책임은 아니지요. 앞에 5년의, 제도가 정착되는 기간은 필요한데 이런 비용들은 엄청나게 공수처가 세금을 많이 갖다 쓴다는 느낌만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되게 액수 대비 그럼 몇 명 기소했느냐 다음 국감 때도 또 따질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많이 이상한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존경하는 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부분에 있어서 전자 KICS와 관련된 예산이 매년 공수처 예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거기에 부응하는 기대를 아직 하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입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법무부 형통단 산하에서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영장을 많이 청구하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형통단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쓰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약적으로 건수가 늘 것 같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공수처 기능이 그런 것이잖아요. 수사 대상이 한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에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수가 너무 적은데 시스템 구축비용은 너무 높고, 이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저는 주진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면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장 건수가 많지 않은데 여기에 좀 과도한 예산이 드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공수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금 수사에 있는 라인들을 다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행하는 차량 숫자가 좀 적어도 고속도로를 깔아야 될 데는 깔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있지만 신청하는 것도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한테 신청해서 받는 것도 있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그냥 예산을 반영해서 인프라는 빨리 구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저는 개진합니다.

○송석준 위원 현재 정보화체계 구축사업이 시작된 게 지금까지 몇 년째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고도화사업

을 추진 중이니까 한 3년, 4년 출범 때부터……

○송석준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축사업은 기본적으로 했고 고도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2단계 고도화사업 진행 중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작동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이 지금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가 다른 경찰·검찰보다는 조금 늦게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그래서 기본 통계를 요구했던 말이에요. 불가능한 통계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통계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정합성을 검증해야 해서 아직은 통계를 드릴 수 없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화시스템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수백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실제는 전혀 업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보화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이지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돈만 들이고, 뭔가 집을 멋지게 짓겠다고 아주 과욕만 부렸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주거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집 이렇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 혈세, 더구나 지금 요새 세수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민생이 지금 타들어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세출조정이라고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더 필요한 예산, 최소한으로 더 필요한 데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각 부문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특히 정보화체계 구축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지요.

성과는 못 내면서 그냥 ‘다른 기관도 이렇게 돈을 쓰니 우리도 쓰자’ 그런 면에서 이거는 척척히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더 하고 또 고도화까지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낭비됐을 때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늘려 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좀 더 집중해서 따져 보시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고도화사업이 이어져 가야지 지금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성과도 못 내는 상태에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또 관련 업체들한테 계속…… 나중에 이것 빵 터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산 낭비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막연하게 자꾸 돈을 계속 쓰기보다는 이번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현재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먼저, 최소 기능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내실화 작업에 집중하세요. 고도화사업에 매달리기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이 그야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다듬는 작업으로 이 사업계획을 좀 수정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공수처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지금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수사시스템이 지금 공수처 자체도 아직은…… 사실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들 예견된 그런 결과였어요.

저는 지난 19년 말에 패스트트랙 투쟁할 때 사실은 공수처가 탄생한다 그러면 이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예방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도 한 번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어거지로 일부 수사 권한을 떼 내고 하다 보면, 이 수사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로 오래된 수사 역량과 또 그런 전문요원들, 그런 것이 축적이 돼서 종합적으로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수사를 새로 운 신설 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사 인력과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저기서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과도 기대만큼 잘 안 나오고 또 심지어 이런 시스템조차도 기준의 다른 큰 기관들은 오랫동안 다듬어 왔고 그동안 여러 가지 협업에 의해서 안정화돼 왔지만, 특히 정보화시스템 같은 것은 안정화라는 절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나면 바로바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완전 독립이라는 취지에서 너무 이렇게 일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기준의 다른 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이 좀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화의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어찌면 이 부분도 그냥 예산을 늘려 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 전액 다 깎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작동 가능하게 하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은 우리가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자꾸 예산 낭비 사례가 지속되고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책임 못 질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소위원장 장경태 차장님, 구축비용이 어찌 됐건 타 부처에 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 안 한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활용내역이나 또 요구하신 여러 자료에 대한 부분도 좀 성실하게 송석준 의원실로 가서 구축계획과 고도화계획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소상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소위원장 장경태 박균택 위원님 하시고 이성윤 위원님 하시지요.

○박균택 위원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대한 기대는 큰데 기대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 상태에서는 전자적으로 영장 송부하고 또는 의견서를 송부하는 것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들, 공수처보다 건수가 훨씬 많은 곳들도 이 사법정보화시스템, 형통망에 연결이 안 돼 있는 특사경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 생각하다 보면 꼭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저도 약간의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소위원장 장경태 예.

○박균택 위원 그때 현재는 어느 범위 내에서 가능이 되고 있고 어떤 점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좀 더 적은 예산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좀 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기표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장경태 이성윤 위원님 하시고, 아까 발언 신청을 하셨으니까요.

○이성윤 위원 차장님, KICS 연결 문제는 공수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찰·검찰·공수처·법원, 법원도 1·2·3심까지 모두 연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현재 지금 KICS 연결 문제는 3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위원들께서 공수처가 실적이 없다라고 많이 지적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KICS 연결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이 KICS 연결은 필수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사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KICS 연결 문제는 그냥 사치도 아니고 실적과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연결을 시켜야 할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수처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된 모든 기관들의 연결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법원이나 검찰이나 똑같이 연결해야만 앞으로 전자문서도 보내고 또 사건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이성윤 위원 이런 문제를 좀 당당하게 설명하십시오. 지금 실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기가 죽어 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진짜 국민의 공수처로, 정말 거대권력을 견제하고 그러면 당당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선언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위원님.

○김기표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디지털화가 되는데 한쪽이 지금 안 돼 있으면 전체 시스템이 잘 안 흘러갈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사안인데 그게 지금 디지털화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행량이 적더라도 그게 다 연계돼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뚫어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나중에 기소돼서 법원에 가면 거기서 지금 평크 나 있는, 공수처는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어딘가에서 땜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만 지금 공수처에 잡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전체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의 완성이라는 측면의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설명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 걸맞게 수사를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장경태 많은 당부 말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동욱 의원실로 노트북 복구장비 사용실적 제출 안 하신 것인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저희가 현장 지원 분석 건수 사용실적 통계라는 게 따로 없어서 저희가 지금 '포렌식 현장 지원 및 분석' 해서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09건이라는 그 정도의 실적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실로 제출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수사장비 사용실적 정도는 자료 요구할 수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사용실적이라는 게 통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장 장경태 정량화된 수치가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수사장비가 어떻게 사용됐다라는 통계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장비 리스트나 목록 같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있습니다. 어떤 장비가 있는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그것을 설명드리시면…… 지금 실적을 정량화해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정도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도 구두로라도 자료제출 요구서에 월 2~3회라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거는 부대의견으로 하기에도 참 그냥 당연한 소리인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보유 장비와 올해의 분석 건수에 대한 설명자료를 의원님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신동욱 의원실로 전달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특활비·특경비·택시비 집행 증빙자료 혹시 제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가 경비의 집행 증빙자료에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의견을 변경해 주실 것을……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 검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사용내역, 집행내역 공개하는 것 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소위원장 장경태 그에 준해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또 구체적 사항이다 그러면 '000'으로 처리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별 특활비 집행내역들 다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공수처도 해당 의원실로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지금 딱 어느 정도 특활비 자료제출에 대한 기준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집행 내역까지 또 안보상의, 외교상의 어떤 민감한 부분 정보는 땡땡땡 처리해서 한 사례나 예시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도 요구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추가로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성윤 위원 제가……

○소위원장 장경태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차장님, 공판 활동 지원 관련해서 스피치 교육 이 부분이 700만 원 드는 데 공수처가 스피치로 공판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증거 수집만 하면 공판 활동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판 역량 강화해 가지고 이런 스피치 교육보다는 정말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 필요하면 법무연수원에 공판 검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잘돼 있거든요. 거기에 검사 5명을 다 보내 가지고 교육받으십시오.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내지는 3주 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고.

또 법무연수원에서 수사 기법도 가르칩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보내 가지고 법무연수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절약하고 검찰의 오랜 노하우도 배울 수 있으니까 법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것 700만 원은 좀 구차합니다, 사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법무연수원 교육, 제가 작년에 온 후에 법무연수원 위탁교육이 잘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법무연수원에 찾아가서 교육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위탁교육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다시 그 위탁교육의 끈을 다시 연결하려고 계속 검찰, 법무부 쪽하고 연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요? 위탁교육을 만약에 받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예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성윤 위원 아무 필요 없는 걸 이렇게까지…… 구차하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이것 없어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소위원장 장경태 법무부에 저희 국회에서 오히려 요구해서, 제안해서 위탁교육 실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아까 전산 사업 이것 한 가지만 더 점검해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도 활용 가능한 단계까지 구축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통계 수치 이런 게 잘 제대로 안 나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안 그래도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

때 지난번 통계 요청한 걸 제가 직접 보고 그 통계를 내오라고 제가 사건관리담당관실에다가 직접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통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엑셀로라도 한번 뽑아놔라’ 그랬더니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작년에 KICS 고도화 사업 ISMP 사업 추진할 때 이 검찰·경찰과 같은 KICS에서 통계를 뽑을 수 있는 그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랬더니 공수처 자체 통계 시스템 구축하는 데 20억이 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 20억은 너무 낭비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미 반영되는 바람에 그래서 약간 유형별 정형화되지 않은 통계를 요청하신 경우에 뽑는 데 좀 애로가 있어서 그것 참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최대한 잘 자료를 엑셀로라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지금 애는 쓰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이것 새 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그냥 고도화 사업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KICS팀장 김민수 공수처 KICS 담당 김민수 주무관이고요.

지금 고도화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 10월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유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전자문서 기반으로 피집행기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그리고 통신사 이쪽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KICS팀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5개 기관이 총 한 220억 되고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36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9월 28일부터 법원이랑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 TF가 구성이 돼 가지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와서 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좀 하고 그랬어야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KICS팀장 김민수 죄송합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결과는 안 나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 당연히 삭제 대상 되는 것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KICS팀장 김민수 이것은 좀 필수 사업이라 꼭 한번 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가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한번 하고. 이 중에서도 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도 여기서 적어도 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찾아서 다시 한번 협의 좀 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장경태 공수처 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제출하실 것들 제출하시고 의원실로 가서 설명하실 부분 설명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회에서 대기하지 않고 수요일 날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김창범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 관련 총 6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1건의 증액의견, 3건의 감액의견, 4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법제처의 불수용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정보화추진 관련 1건의 감액의견과 1건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법제처는 이 사업 내 개인정보 컨설팅 예산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2026년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를 통합하는 정부입법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 56억 36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정부입법 통합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체계의 정비와 안전성 확보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별도의 컨설팅 예산을 신규 편성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개인정보 컨설팅 예산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이후 필요시 컨설팅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제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화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화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응형 웹 미지원, 모바일 기능 제한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졌는데 정부 예산안 2억 5100만 원으로는 디자인 신규 설계까지만 가능하고 실제 시스템 적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인건비, 제작비, 기술료 등을 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위해 8억 2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제처는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관련 감액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께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담당자의 법제실무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단기해외연수는 관광성 일정 등 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일정에 포함되거나 기존 실시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출장이 이루어진 사례 등이 있고 이미 운영 중인 법제교육 과정과 법제교육센터로도 법제실무 능력 향상이 가능하므로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예산 4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시며 법제처는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

연수의 목적과 프로그램 일정을 정책·법제 관련 기관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일정 변경 시 그 사유 및 대체기관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연수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보고서 평가체계를 강화해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제처는 첫 번째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고, 두 번째 지적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불수용하신 의견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4번입니다.

지금 정부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컨설팅 예산 1억 2000만 원에 대한 감액의견입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입법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3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인정보는, 정부입법 이게 구축되는 기간 동안에도 지금 법제처에서 5개 정보시스템, 정부입법 시스템을 제외하고도 4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 5개 정보 시스템에서 한 15만 5000건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계속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S, A, B, C 중에 계속 B등급을 받는 사실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개인정보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정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이 다른 비목의 필요성 예산인데.....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다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여기에 대해서 의원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좀 설명을 드리시고 예산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좀 뭉뚱그려져서 같이 비목에 있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보고를 드리시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법제업무 정보화는 대단히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이왕에 하시는 김에 어쨌든지 간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법제정보들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최대화하는 쪽에 좀 전심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국감 때 제가 지적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각종 소송 등에 있어서 국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변호사를 세우지 못하고 사건에 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형사사건에서도 한 50%, 대법원에서도 이게 큰 문제だ라고,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민사사건에서는 거의 70%가.

그래서 어쨌든 법령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해서 개인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전히 사법 체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 그것이 용어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정보를 쉽게 체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왕에 정보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예산 충분히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성이 최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 지금 1억 2000만 원 이게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별도의 컨설팅 예산 사업으로 여기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법제처기획조정관 최영찬 예, 별도 예산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지금 신동욱 위원이 이걸 삭감하라 했더니 불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때는 별도로 필요해서……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이것과 별도로, 정부입법 통합플랫폼 구축과는 별도로 현재도 5개 다른 정보 시스템에서, 이걸 포함해서 5개 정보 시스템에서 15만 5000건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좀 체계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송석준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별도 컨설팅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행안부도 그렇게 하고 다른 기관들은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적을 받아서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송석준 위원 처음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송석준 위원 신규 예산이라 낯설어 보이는데 그게 그러면 누구의 권고 내지는 정부 간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보 시스템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잘하고 갖추고 있는가를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들이 계속 S, A, B, C 중에……

○송석준 위원 B가 나오니까?

○법제처차장 김창범 B가 사실상 제일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러니 법제처가 개인정보에 좀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사고도 많이 나니까 그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어라 그런 취지에서 권고를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사전에 제대로 설명이 안 됐구먼요, 이런 지적이 있었을 때.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그것들은 제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적극 지적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겠네.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의 단기연수에 대해서 법제처도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지요? 작성하고 보관하시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수용 의견에 대해서 부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이것은 사실 저희들 24년도, 25년도 단기해외연수의 경우에 지적 하셨듯이 제가 정말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 총책 임자로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하고 지방의 법제업무담당자나 각 부처 안에서 보면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물을 이렇게 견학하고 또 현장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입니다. 법제처에서 각 부처에 있는 법무담당자 또 지방의 법제업무담당을 다 모아서 기관 섭외를 하면 훨씬 더 기관 섭외가 잘되고 또 보고서 분석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저희들의 예산이 4300만 원입니다. 그걸 좀 살려 주시고.

다만 이성윤 위원님이나 송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윤 의원님 안을 보시면 단기해외연수의 목적과 프로그램에 맞게 정책이나 법제 관리 이런 것을 잘 짜라, 그것하고.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바꾸더라도 그걸 투명하게 관리를 해라. 다음에 세 번째는 사후 평가체계를 만들어서 예산이 좀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 이런 부대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개선을 만드는 걸 부대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안을 만들고 또 송석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되는 사업이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이게 제가 서기관 때부터 만들어져서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한 20년 정도는 넘은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20년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매뉴얼도 많이 다듬어지고 또 이게 성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측면이 지적되는 거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는 어차피 소위 한국의 시스템이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선진제도로 우리가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의 교류를 통해서 상대국에 전수도 해 주고,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해 주고 하면 K-문화 시리즈로 하나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나가는 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해외로 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관계기관하고 또 해서 외국에서 배우러 올 수 있게끔도 하고, 이런 뭔가 실효적이고 충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게 오래된 10년이 넘은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좀 더 이제는 한국의 제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써 외국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포용적 국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아갈 명분은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국격에 맞게, 또 나아가서 우리 제도 담당관분들 해외에 나가서 같이 해외의 상황도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것도 있지만 그 잘못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모티브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게끔 본부 차원에서 미리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준비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미리 만들어서 해외 나갈 때 그것도 활용하고, 또 해외에서 수집된 걸 갖고 다시 반영해서 내실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제는 일단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제도를 또 법제처의 업무 시스템을 이렇게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하나의 계기로 이것을 한 번 더 키워 갈 수 있게끔 각오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걸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더 거듭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최혁진 위원 6번의 외국법제기관 교류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계속 축적해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특히 우리 법사위에 있는 사법 관련 공조직들의 공히 비슷한 특징들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민 기본권으로서 기본사회 실현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목표에 맞게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들도 새롭게 무슨 시대정신을 반영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제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법제기관 교류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사법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사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법 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공동으로 모색한다라든가, 국선변호사 문제는 아까 대법원이 예산 반영한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문제도 있고 재기수사명령권 같은 경우에도 일부 특권층의 자기방어로 악용되는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문제가 그렇게 악용되지 않고 일반 시민과 소시민들도 그런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사법체계들을 어떻게 만들거냐 이런 것들은 공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평등과 격차 문제가 일반화돼 버렸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정책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 법제처에서도 우리 사법체계 안에 있는 국민 기본권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거나 사법의 사각지대 문제,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서 각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공동의 어젠더를 설정해 나가고 개선방안을 찾아 나갈 건지, 이런 주제를 제시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권의 변화들을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기획을 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법제처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사항을 개발하고 또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지금 아직 설립이 안 돼 있는 모양이지요?

○법제처기획조정관 최영찬 오늘 점심 1시쯤에 설립식을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설립이 됐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드는 건가요?

○법제처기획조정관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이거라는 얘기인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내년도 예산에……

○김기표 위원 내년도 예산?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김기표 위원 올해도 지금 본예산이 이렇게 2억 4300 이걸로 지금 만들어졌고 내년의 운영 관련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소위원장 장경태 차장님, 참여 나라들이 어떻게 되지요, 이것?

○법제처기획조정관 최영찬 오늘 사이닝한 데는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을 지금까지 협회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법제처는 오늘 의결할까 하는데,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법제처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건에 대한 증액 8억 2100만 원이 있고 총 1건에 대한 감액 954만 원이 있으며 부대의견은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어찌 됐건 4번에 있는 정보화 관련된 오해나 이런 부분들은 신동욱 의원실 가셔서 잘 한번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범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김용호 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이은정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2026년 헌법재판소 예산안 관련 총 7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1건의 증액의견, 2건 감액의견, 9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현재의 불수용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판활동운영지원 관련 1건의 감액의견과 1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께서 주요 인사의 구술총서의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구술기록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점, 구술총서 발간 후 헌법재판소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점, 종이를 지양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 3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같은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시며 헌법재판소는 구술총서의 실제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발간 부수를 조정하고 단가를 재산정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고 두 번째 지적에 대하여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 관련 1건의 감액의견과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께서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은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 참가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평균 2주간의 시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성된 예산 전액 감액 할 필요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김기표 위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해당 예산을 전환하여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액의견과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연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불수용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일부 수용에 대해서 현재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사무차장입니다.

구술총서는 저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전직 처장님들의 회고록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령 경험 같은 것들을 쭉 모아서 그걸 책자로 내는 사업입니다. 저희의 역사나 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료로서 꽤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액砍감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만 꼭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나 또 국회에서도 같이 발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임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일부 감액의견은 저희가 부수를 조정해서 한 500만 원 정도는砍감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지금 600권 발행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목표액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주로 주요 인사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가 주로 배부처가 대학교 도서관, 법원 그리고 국회……

○송석준 위원 아니아니, 주요 인사.

○소위원장 장경태 도서관 비치하신다고……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술총서를 구술하게 되는 주요 인사.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주로 전직 재판소장님, 재판관님 그리고 사무처장님까지 재판소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해 온 사업인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구술채록 사업은 저희가……

○헌법재판소기록연구관 김은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희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17년부터? 17년부터 해 왔고 관계기관도 같이한다 이거지요, 유사 기관에서도?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중요한 경험을 같이 공유한다는 또 지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유관 기관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사실은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전자도서화로 많이 전자문서화 되고 그래서 과거식의 출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기존의 수요는 있고 그리고 전혀 의미 없는 사업이 아니면 일단 제가 이 사업 전액 삭감이라는 의견은 좀 조정을 해서, 일부 조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감액하시고.

앞으로 이게 좀 더, 경험을 구술하고 이런 것은 좋고 그거를 문서화하고 책자화해서 공유하는 건 좋은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또 찾아보시고 필요하면, 더 많은 수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건 전면 재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번에는 시대도 바뀌고 했으니까 500만 원 삭감 정도로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제가 한마디만……

실장님, 대학 88곳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여기 자료 보면 88곳 대학 배치 그래서 총 176권을 책정하셨던 데 그래도 대학교가 88곳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기준이 법대가 설치된 대학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법대가 없다고 해서 중요 자료를, 대학 도서관 가면 다 열람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인데 대한민국에 최소 400여 개 대학이 있는데요. 이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하정수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상위 88개 대학 이런 것 같은데.

○김기표 위원 제가 아까 못 들어서 그런데 500만 원을 감액하는 데 동의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미안합니다, 못 들어서.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하정수 배부 부수를 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건수를 좀 줄이겠다는……

○김기표 위원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양보하셨는데 그것…… 왜냐하면 중요한 자

료지요. 이런 것은 500만 원 줄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오히려 저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김기표 위원** 왜냐하면 이게 팔리는 책은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이런 것은 조망해야 되는……

○**소위원장 장경태** 도서관에 원래 다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김기표 위원** 아마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500만 원 감액도 다시 철회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뒤에 계신 분 산출 기초 좀 말씀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500만 원 깎자니까 참 이거 너무 간지러워서……

○**소위원장 장경태** 88개 대학의 기준은 뭐예요?

○**헌법재판소기록연구관 김은희** 모든 대학 도서관은 아니고요 법학도서관이 있는 대학 기준으로 하고 법전원이 있는 곳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법학과 전공이 설치된 대학이 88곳뿐인가요? 저도 이 통계는 한 번도 못 봐서.

○**헌법재판소기록연구관 김은희** 예, 그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라도 소중한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기록연구관 김은희** 부수상, 저희가 1000부 정도는 되어야지 모든 대학에 보내는데……

○**소위원장 장경태** 전 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기록연구관 김은희** 부수 내에서 하다 보니까 법학도서관 있는……

○**소위원장 장경태** 왜냐하면 이런 책들은 기록용이자 열람용이자 보관용인데 신규로 추가 제작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대학에 비치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보통 시립도서관 이렇게까지는 다 비치 안 되더라도 학교 도서관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88곳 기준이 뭔지.

○**김기표 위원** 기준 예산대로 해 주면 잘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장경태** 어떻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500만 원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장경태** 전혀,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래도……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강력히 원하시면 제가 500만 원 과감하게 양보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국토부에서 예산 다룰 때는 10억까지도 정말 간단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소위원장 장경태** 저희 국토위 할 때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사할 때, 단위가 다릅니다.

송석준 위원님께서…… 여기 11페이지인데요. 타 부처도 연수 예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불수용 의견에 대해서 잘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연임 연수 사업은 저희 헌법연구관들도 10년 단위로 연임에 대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10년, 20년 이렇게 주기에 따라서 연임이 결정되면 한 10일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연수를 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 10일 간의 출장기간 동안에 그렇게 고도의 지식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견 연구관들을 연임을 계기로 해서 연수를 한번 보내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연구관님들 이직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기 진작이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연구관님들이 다른 일반 행정부처와 달라서 해외를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보내 주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도 자체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저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입장에서 뭐하기는 했는데.

이 사업은 또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사업입니다.

○**송석준 위원** 오래된 사업, 10년 이상 됐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최소한 10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지금 연간 수혜를 보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신다고……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이게 그때그때 시점에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사람들이 숫자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통상 한 오류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예산 요번에 전년도 대비 조금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의 근거는 뭐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주로 여비, 환율이나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송석준 위원** 만약에 이게 요즘 어려운 중인데, 실제 이렇게 해서 뭔가 많은 성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 가장……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자료에 보시면 12쪽에 연임 연구관 연수 갔다 온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대개 영국, 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등의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주로 가서 심화 연구한, 최근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가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폐이퍼도 쓴 내용들입니다.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주장은 하고 싶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안착

된 사업이고 또 순기능을 좀 더 살려 줄 걸 당부드리면서 삭감 의견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감사합니다.

○최혁진 위원 이것 관련해서 그래도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경력 11년 차, 21년 차 이렇게 딱 해 버리니까 이게 그냥 일정 기한이 되면 포상성으로 해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자꾸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11년 차 돼서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본인이 그다지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이성윤 위원님께서도 휴식성 시찰 성격이 강하다라는 지적이 반복되어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것도 이걸 이렇게 운영하니까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방 언론 보시면 지금 제일 핫한 것 중의 하나가 시도 의원님들이 올해 유럽 여행들을 너무 많이 가셔 가지고 언론에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내년이 지방선거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이래 가지고 외유성 연수 많이 가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책연수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가서 많이 배워 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달라는 거지 단지 때 됐다고 놀러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이걸 11년 차, 21년 차 이렇게 딱 잘라서 할 건지, 아니면 매년 정책연수 목표를 좀 잘 설계를 하셔서 실제로 정말 원하거나 필요한 분들이 갔다 오는 사업으로 만드는 건 어떨지…… 하여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아마 매년 이런 문제 제기나 의혹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기표 위원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삭감 의견을 철회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아니셨으면 제가 철회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판인데, 역시 송석준 위원님은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연수 같은 기회가 좀 있나요, 장기연수 1년이나 2년?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호 예, 연구관분들 세 분……

○김기표 위원 1년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호 예, 1년에 세 분.

○김기표 위원 세 분씩 계속 나가는 예산은 잡혀 있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호 예.

○김기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수도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연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외유나 이렇게 해서 비난도 많이 받지만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저는 진짜 창의성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항상 있던 환경보다 나가면 배우는 것도 있고 인간의 어떤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런 걸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방면으로라도 해서 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이라도 검토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

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저도 송석준 선배님의 인품에 존경심을 표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구체적인 공부와 거리가 면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주로 견학 차원이었던 거지요. 그때 보면 캐나다라는 나라를 들렀을 때 정말 친절한 시민들,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감하는 바가 많았지요. 친절은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한 기술로 생각했었다가 이게 정말 신사·숙녀가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국내에 와 보니까 저도 잘 못 느끼는 사이에 사람이 뭐가 좀 달라져 있었는지 법률신문에서 친절 검사라고 그런 글을 써서 굉장히 쑥스러운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유럽에 출장을 갔을 때 교민들 또 유학 가 있는 사람들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할 때 우리 외국의 법령들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번역을 하면 주로 법조인들하고 법학자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다가 오히려 교민들을 위해서 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이걸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식으로 해서 좀 국익에 또는 국민들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연수 기회를 통해서, 자세한 보고서보다도 본인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한 가지씩만 상세히 보고하게 하고 그것들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밝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국익 또 국민에 대한 봉사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좋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홍보할 때, 필요성을 설명할 때 지적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다음으로 부대의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셨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님 안과 이성윤 위원님 안이 있는데요. 보니까 두 안이 연임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수와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둘 다 각각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셨는데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수용에 대한 현재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임 연수를 전문화연수로 확대 혹은 통합 운영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 2개 사업의 성격이 좀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연수 자체는 연임 연구관을 대상으로 하는 10일짜리 사업이고요. 전문화연수는 한 6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이라서 2개의 사업 자체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전문화연수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그렇게 변경시킬 어떤 검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부분이라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저도 뒤에 연수 실시 현황을 보니까 길어야 10일, 짧으면 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뭐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한다고 가는데 10일 동안에 뭘 할 수 있는지, 차라리 대놓고 ‘우리 관광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요. ‘우리 열심히 지금까지 몇십 년 넘게 근무했으니까 외국으로 휴가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문화연수처럼 이렇게, 6개월씩 가잖아요. 가서 6개월씩 쉬면서 외국 좋은 제도 심층연구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현재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10일 가 가지고 뭘 할까. 그러면 다른 부처도 10일짜리 이런 연수 제도가 있나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법원에서 가는 제도하고 똑같은 제도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요? 그것을 닮아 가지고 싶으세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닮아 간다기보다도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서……

○**이성윤 위원** 10일짜리 이런 것은 개인 비용으로 휴가 내서 가라고 하고요. 정말 고참 연구관에 대해서도 연구를 오랫동안, 희생하고 고생했으면 뭐 6개월, 짧으면 3개월 이렇게 해서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 누가 봐도 다 휴가 보내는 것 이지.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을 닮지 마시고 헌법재판소답게 한번 제도를 새로 바꿔 보시면 어떨까.

저는 연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랫동안 연구관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요. 그러면 활력을 재충전해야 되는데 외국에 가 가지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갖고 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저는 현재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독일 루에에 가지고 현재가 지방에 있으면서 얼마나 지방의 눈으로 수도를 바라보고, 오스트리아 가지고 진짜 지방 출신 재판관 있음으로써 얼마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이런 것 했으면 진짜 과거 2004년에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다 이런 판결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현재 그리고 연구관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주십사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되는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너무 명시적으로 이것을 없애고 전문화연수를 확대하라고 써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어서, 김기표 위원님이 하신 정도로 해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형태의 것들도 검토해 볼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성윤 위원**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해당 예산을 전환하여’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지금 그게 ‘예산을 전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뚜렷하게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시가 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대의견이라서, 그 뜻을 담아서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송석준 선배님처럼 인품이 넓으시니까.

○**이성윤 위원** 제도를 하여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연수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 놓으니까……

○**김기표 위원** 그런데 또 장기 연수도 있고 단기 연수도 있고.

○**이성윤 위원** 그러시지요, 넓은 마음으로.

○**송석준 위원** 여기 장기 연수는 1년에 몇 분이 가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세 분 보내고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장기 연수 1년짜리?

○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1년짜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법부는 1년밖에 못 보내 주니까.

○ 송석준 위원 이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라는 거니까 더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

○ 소위원장 장경태 전문화연수는 6개월짜리 아니었어요?

○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6개월짜리는 한 사람 보내는 게 있고요.

○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요. 한 사람 6개월이고 1년……

○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1년짜리가 세 사람 있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아, 세 사람 있고요.

○ 김기표 위원 법원하고 연동해서 아무래도 제도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법원 예가 어떤지. 그렇지요?

○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기재부에서 어차피 심사할 때 같은 제도를 인정해 주지 저희만의 다른 것은 잘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지요?

불수용, 철회를 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정 헌법재판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건에 대한 증액이 600만 원이고 감액은 없으며 부대의견은 총 8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차장님께서 처장님이나 소장님께도 보고를 드리시면 좋겠는데요. 연구관에 대한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또 오해 없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10분에 속개하여서 법무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장경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18쪽 자료인데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 검찰국, 송석준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 의견 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19쪽에도 신동욱 위원님 불수용하는 이 부분 부대의견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0쪽으로 넘어가서 송석준 위원님 특경비·특활비 감액의견 불수용 의견을 정리하면 될 거고요. 박은정 위원님 특활비 72억 불수용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경태 위원, 전현희 위원 특경비하고 업추비로 전환하는 부분, 20쪽 하단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3쪽입니다. 23쪽 검찰청 운영 인건비,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 이게 200억 감액돼 있는데요. 박은정 위원님 의견 불수용인데요,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일단 특활비·특경비 관련돼서는 소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셨지요? 그리고 대통령실 지급 기준 보셨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 지급 기준 참조하셔서 그 기준에 좀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특활비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제가 임은정 동부지검장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피해 같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대법원에서 소송 나온 결과대로 다 공개를 해 왔고 사실은 기관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로 다 자율권을 줄 겁니까? 이게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양형기준도 그렇고 정보공개라든지 모든 국민들에게 범형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다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처리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동부지검에 어떤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을 하거나 서부지검에 공개 신청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받아 보는 국민 입장에서 이게 동일해야 되고요.

아까 그냥 너무 슬쩍 넘어갔는데 사실은 개인에 대한 징계를 떠나서 이 부분은 영어서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그거는 재량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각자 판단에 따라서 국민 권리가 달라지면 그건 기관장이 아니고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법무부나 검찰의 특활비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고 대법원 판례나 이번 정부 들어서 바뀐 기준이 있다 그러면 지침에 정확히 반영을 해서 그 반영된 기준에 따라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적용을 어긴 기관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별 공공기관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법무부 차원에서 정확히 검토해서 그 내용을 져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저희가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일선이 통일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 **주진우 위원** 정확하게 공문을 내려서 지키라고 지시를 하고 그 지시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도 있지만 복종 의무도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개인 소신을 주장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 정말로 임은정 지검장의 의견이 맞다 그러면 이번 정부 들어서 꼭 또 법무부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성격의 특활비면 감사원, 대통령실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공개된 그 기준하고 임은정 동부지검이 공개한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뉴스타파의 뉴스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같으면 어떻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집행했는데 공식적인 집행 내용이 언론보도에 단독으로 실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거는 너무 명백해서 법무부에서 저보다 법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명백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검토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활비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대검과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셨나 보네요?

○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협의해 주시고요. 일단 대통령실이나 다른 각 부처들 특활비 공개 내역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기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검찰 특성에 맞게 좀 조정을 한 다음에 대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비싼 밥 먹었다고 그 금액만큼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출하셔서 소명이 되면 그거지, 그 내역을 저희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저희도 굳이 이렇게 여야가 공방하거나 또 부처를, 국가기관을 상대로 좀 너무 공방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급적 제출만 하셔도 또 위원님들이 납득하시는 선에서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송석준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 안에는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및 특정 업무경비의 집행내역을 국회에 전부 공개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이 정도 부대의견 수준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정도의 부대의견인데 지금 여기는 전부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행내역을.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불수용 의견에 너무 구체적인 어떤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 본 앤이 지금 이거거든요.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면, 송석준 위원님께 또 한번 차후에 의견을 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의견 없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1연번인데요. 검찰청 운영인건비가 이·전용된 부분에 대한 박은정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전용에 대해서 납득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도 의문이 가시지 않은 또 위원님이 계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셔서 이·전용에 따른 지적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실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가 그 전에 소명을 충실히 하시는 걸로 하고 또 주말 간에도 국회는 어찌 됐건 열심히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시는 대로 최대한 소명하셔서 제출하셔서 원만하게 수요일에 있을 회의에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히 제출하고요. 오늘 소위에서 특활비 등 질의하신 사항과 저희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을 주말 포함해서 다음 주 초까지 개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그려면 이상으로 오늘 법무부 심사를 마치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심사와 관련된 의결은 다음 주 수요일,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대법원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오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차장님이 오시는 시간 동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와 관련된 부대의견에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추후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제가 제안드렸는데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추후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 관련된 특경비와 업추비 제출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부분들 속기록에 남기고 추후에 또 지적할 사항 있으시면 차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특별히 얘기하실 것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차장님 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5분 정도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예산의 실무 책임.....

○소위원장 장경태 실장님 잠깐만요.

아까 논의된 사안 중에 정리된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들 또 제안 주신 것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 먼저 듣고 자료제출 관련된 실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관서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제외하고 오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AI를 활용해 가짜 판례, 허위 인용 등이 포함되어 작

성된 변론서 내용을 검증하는 변론서 스크리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증액에 대해서 아까 잠깐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김기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의 과업 조정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과 새로운 사법지원 AI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는 방안의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의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한 AI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류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여기에 대한 문구 수정은 제기하신 각 해당 의원실과 법원행정처가 함께 상의를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나경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용역비를 ISP 용역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수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ISP 용역비로 교체를 한다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은 1억 원 그대로 하셔도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억 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이 주셨던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혹시 조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문구 그대로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의원실에 양해를 구해서 저희 진행 방향으로 B안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대의견의 안인 앞에 있는 A안과 B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B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뭐라고요?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뒷부분만 남기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소위원장 장경태** 새로운 대국민 사법지원에 관한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의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한 AI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AI 구축 및 개발 과업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지금 좀 부담스러우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현재 과업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요.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앞부분 '방안'까지는 삭제하고 그 뒷부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후단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표 위원**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한 AI 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정도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김기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경미한 자구 정리 등은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나중에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특경비 및 업무추진비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대법원 예산의 실무 책임자로서 국회 예산안 심의에 장해를 초래한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부분 자료제출을 완료하였고 파일과 같은 나머지 자료도 곧 제출하겠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간략히 자료제출 자연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회 의정자료가 대법원에 오면 시스템상 법률 관련, 예산 관련 구분 없이 기획조정심의관실에 갔다가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갔다가 오는 단계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자료 이 부분은 예산 관련은 예산실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기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등 의정자료량이 많을 경우에도 자료가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서 차장·처장의 결재를 거쳐서 제출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협의하여 준비된 것부터 보내고 결재 과정도 전화나 톡 등을 통한 설명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균택 위원님의 부대의견과 같이 업추비·특경비를 분기별로 내역까지 분개하여 보고를 하면 앞으로는 소중한 예산을 지침에 맞게 세심하게 집행하고 국회 예산심의도 용이하고 법원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빙자료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적시에 제출하겠습니다.

법원은 기관 성격상 특수활동비도 없어 특경비와 업추비가 사법행정에 정말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부대의견을 통한 분기별 제출도 법원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므로 감액 대신 부대의견으로 정리해 주시면 성실한 예산집행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요구 및 제출 자료 정리표에서 보시는 대로 대법원장 업추비, 대법관 업추비는 이미 제출 완료하였고 대법원 증빙자료도 올 상반기는 이미 제출하였고 7~9월 분은 곧 제출할 예정이고 각급 법원의 집행내역 엑셀 자료는 오늘까지 25년도 결산.....

○**소위원장 장경태** 실장님, 제출 목록은 저희가 각 개별 의원실에서 다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요. 작년에도 검찰청이 어쨌든 간에 거기도 나름 노력을 하고자 했으나 저희가 그때도 20%와 50% 삭감 안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 또 과정에서의 문제들로 인해서 전액 삭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법원이 소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저는 원

만하게 예산심사가 잘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출받으시면 검토하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아마 대부분 법원에서의 여러 처우 개선이나 R&D, 교육, 연수 예산에 대한 증액은 당연히 다 공감하실 거고요.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사용내역에 대해서 특경비나 업무추진비를 보고 그 비용 집행이 옳냐 그르냐를 가지고 제출한 내역에 대해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비싼 밥 먹었다고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하시면 대부분 다……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거지 국회가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이렇게 당부 말씀 드렸고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와 또 경미한 숫자 조정에 대해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의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특경비와 업추비 등에 대해서도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관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기표 박균택 송석준 이성윤 장경태 주진우 최혁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

법무부

차관 이진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법제처

차장 김창범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차장 김용호

임시회의록